

목 차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 1

김경묵(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국회의 회의 운영 / 45

권영진(국회사무처 의사국장)

회의록 사례 연구 / 103

홍순관(대한속기협회 지도위원)

음성인식 기술의 현황 / 171

이경식(대한속기협회 지도위원)

제25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김경록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2017.5 인문디자인경영연구원

·창의성

4 차}-> 산업혁명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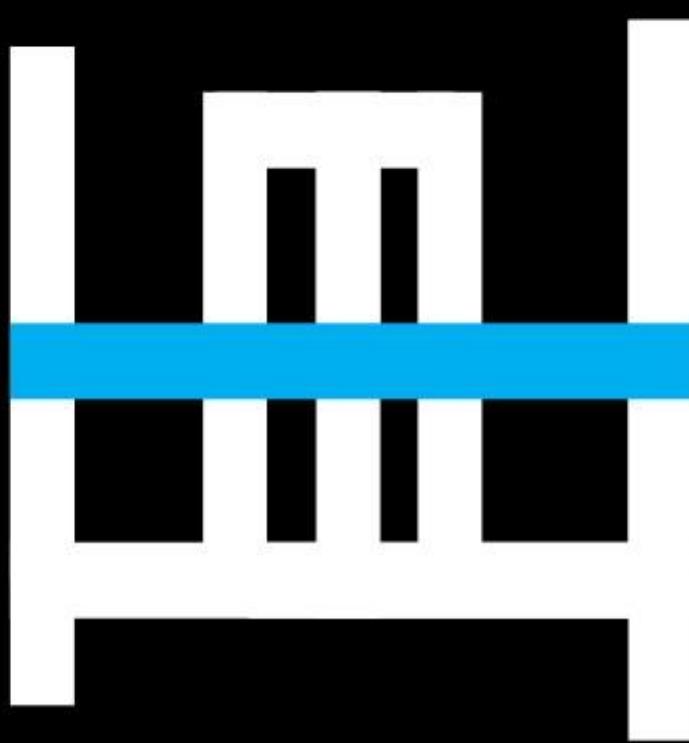
[이 야기 주제]

한자와 한글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漢字와 漢字와 한글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한자를 디자인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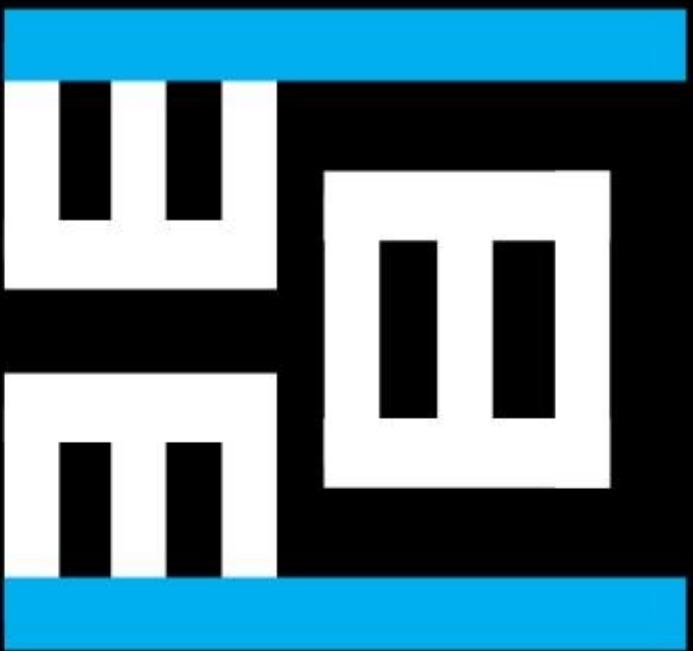
무슨 글자일까요?



간 는 누

인 흐를 는 온

사람사랑



1796년, 정조

“아름다운 것 이
넓이 적을 기 냐니라”

스터브 잡스와 정조 [미친 디자이너]



“진정한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애플-1 (1976년)

“아름다운 것이
능히 적을 이기느니라.”
수원화성 (1796년)

하이데거의 철학 → 마크와이저의 UC → 아이패드, 탄생과정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마크와이저, 유비쿼터스 컴퓨팅 창안

아이패드 || 광고

“여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빠르고, 얕고, 가볍고,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모든 것은 더 기쁘고 마법적이기 까지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tybq56zD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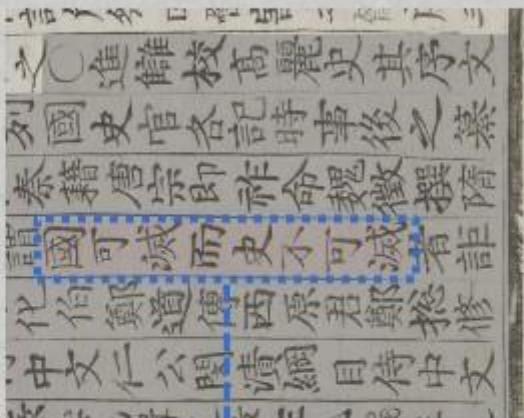
U-Computing 의 근원적 의미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술이 스며들어 있고,
기술이 있음을 때 가능해진다.
뒤로 물려서 있을 때 보드와 같은
그리고 패드, 탭, 디바이스로 구현된다.

이것이 UC의 탄생 개념이며,
디자인의 존재 이유이다.

서| 중| 시| 문|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에는 멸망而史가 멸이 사부가 멸[國可滅] 국가 멸이 사부가 멸[國可滅] [세종실록 1424/8/11]



사람을 보다.

“수령의 지적이란 백성을
사랑하고(애) 지켜주는(호)
인 오에 다른 일은
없는 것이다.”

1435년(세종 재위 17년), 1월 20일, 세종실록

실록에서 인문디자인을 발견하다.



Design thinking

그윽이(羈, 도둑질할 절)
亢(구멍 험) + 甘(달 감) + 米(쌀 미) + 高(별 높이)
(출처 소전자형)

인문학의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서상호를 다른게(남과 다른) 보는
“실로 윤으로 다른게”

그리고, 나를 알게 되다.

4자 산업혁명이
기준의 1~3자 산업혁명과
하나,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가?
둘, 살기 위한 역량은 무엇인가?

보증 (의숙한 습)

경계

경계

혁명
(낮선 삶)
그원

혁명
(낮선 삶)
그원

1~3차 산업 혁명 윤

‘경계 짓기’로 시작되어,
그 경계의 정점에 이 를 두
새로운 ‘알고리즘화’를 통해
‘단순화’한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하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한 경계 짓기’를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여
사람의 일을 수령이 둉하게 해야 합니다.

(인문디자인경영연구원)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8 - 15 March



여러 부모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를
자연하게 고민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들을 업니다.

지금 ‘어디에’, ‘무엇에’, 짐 중하고 있는지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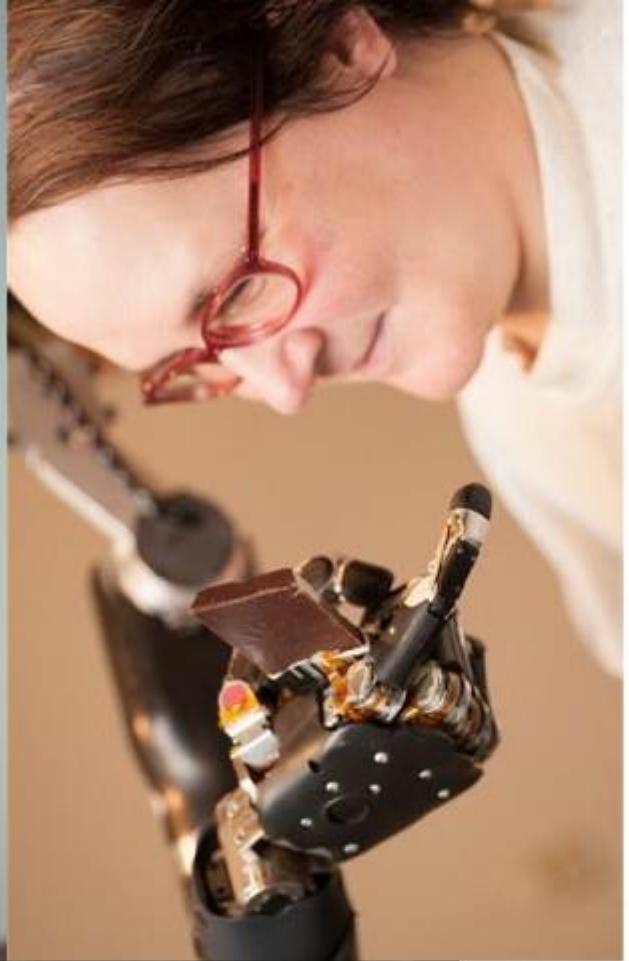


그 해결의 시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과 트렌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낯선’ 사람과 도구의 균원을 먼저 생각하고,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창의성을 만드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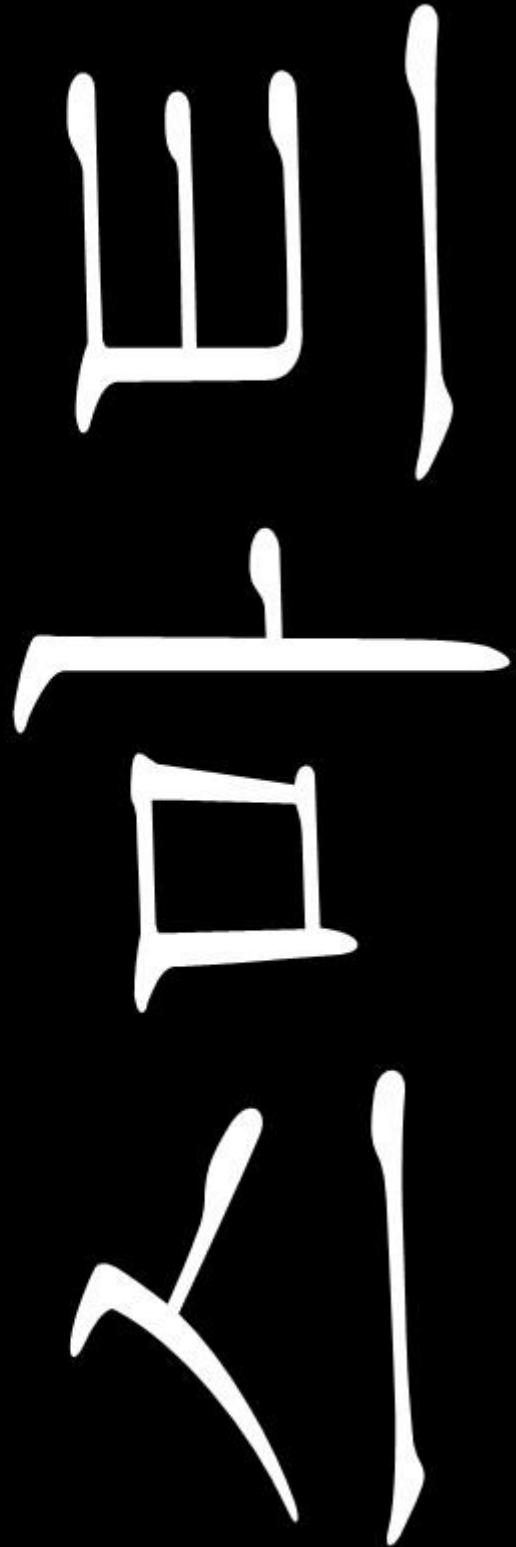
[사례 연구]

가례
장례
죽례
례례
례례
례례
례례

편안함 안락함 or 불안함 두려움



[첫 번째]



는 뜯뜨해 지는 것아이다.
그러나, 그 뜯뜨함이
는 뜯뜨의 뼈지(disappear) 양아ㅏ야 한다.



[두 번 째]



은 다양한 과정을 단순화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어 먹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터였다. 그래서 궁장이 반드시
내 삶으로 들어 오게 해야 한다.



בְּרִי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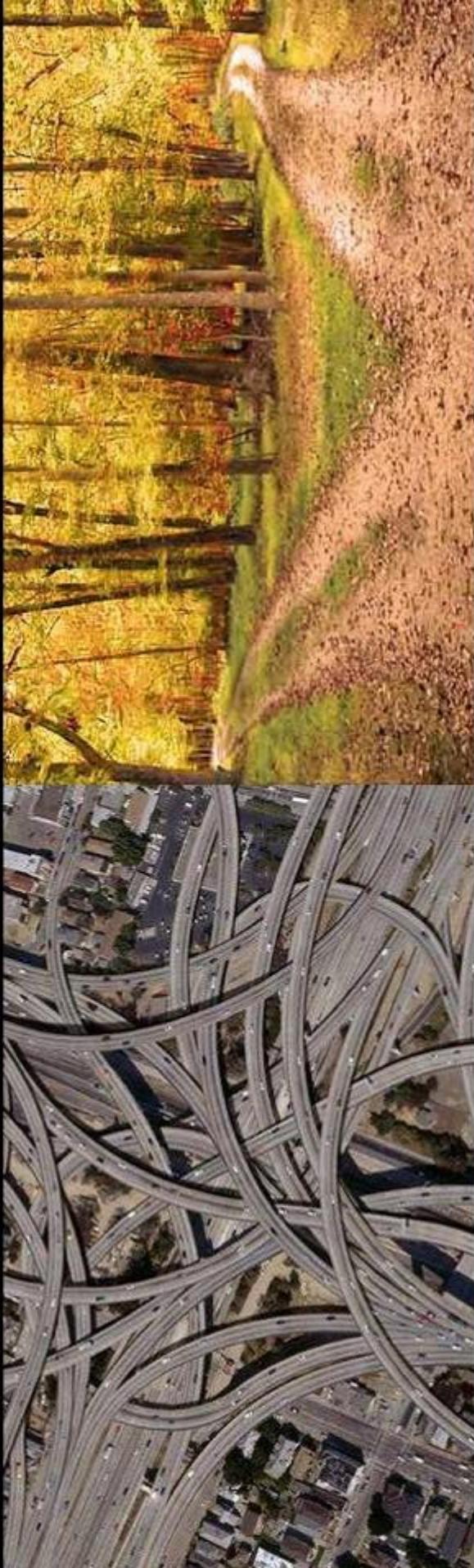
מִשְׁמָר



לְפָנֶיךָ



만들어진 길 (Methodus)



Aporia(용기, 혁신)를 가는 것은 왜 주저 하는가?

디자인

Various



기술

Linear

문학

Flexible

인간



기술의 등장

신기술 신조형 등장



퍼스트 무버

의미부여와 클래식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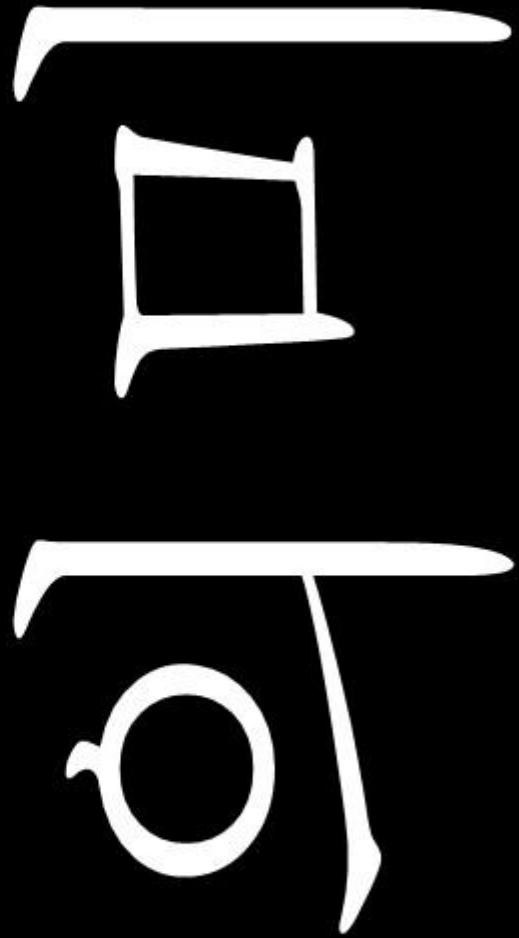


팔로어

메가 트렌드와 소멸



[세 번 째]



사람을 사감의 '습' 속으로 그 '의미' 가 보입니다.
를 넣을 수 있어야(만) 험합니다. 그리고,
더자인 하기 위해 서는

사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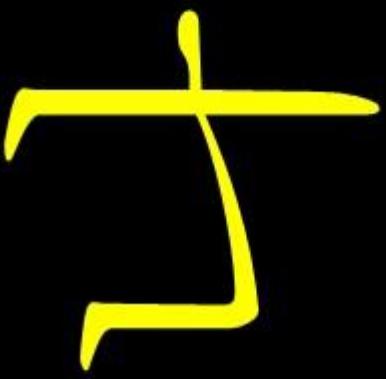
단도



기부

결국, 더 자ன은
기술 가까워져
사람을 향하는
수단입니다.

(디자인)의 디자입니다.



또 뜻 한(스마트) 일터(공장) 가 중심인
세상에서 살아 갈



스마트 공장
(독일)
하우스 루프 그린
(독일)
공법

Harvard Business Review



Harvard

HARVARD BUSINESS REVIEW

32

8

SEPTEMBER 2015 | DESIGN THINKING COMES OF AGE | CYBERSECURITY'S HUMAN SIDE | BRINGING SRI TO LIFE |

How Samsung Became a Design Powerhouse

By Praveen Jagannathan

THE EVOLUTION OF DESIGN THINKING

IT'S NO LONGER JUST FOR
PRODUCTS. EXECUTIVES ARE
USING THIS APPROACH
TO DEVISE STRATEGY
AND MANAGE
CHANGE.
PAGE 55

37

[2015년 9월호]
삼성은 어떻게 디자인 강자가 되었나?

- 인문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은
1. 생각을 개념화하고,
2. 그 개념을 상품화하는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1단계]

생각의 개념화 과정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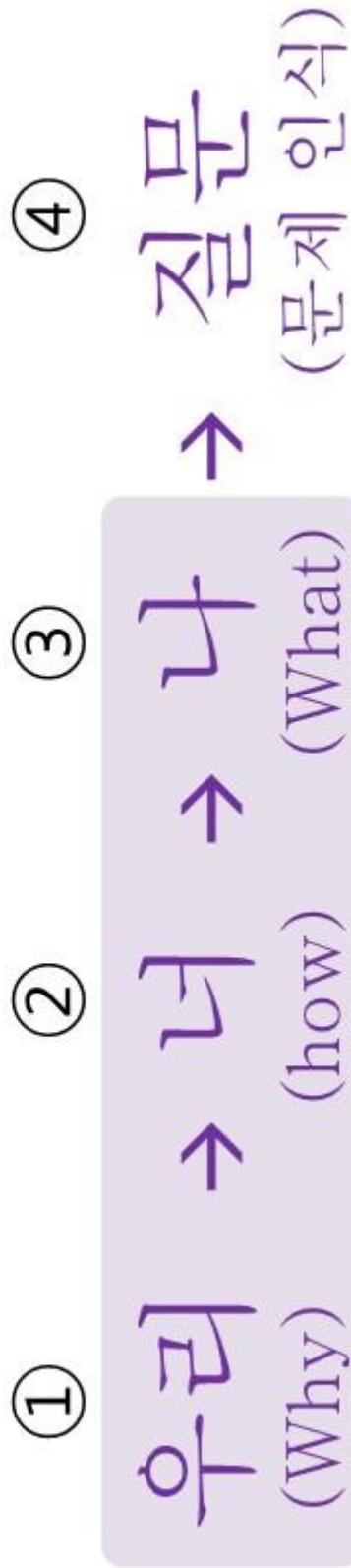
개념의 상품화 과정

말을
설득하고
말로

그 말과 글을
고려

1단계 : 생각의 개념화 교육 과정

- 문제 인식 역량 향상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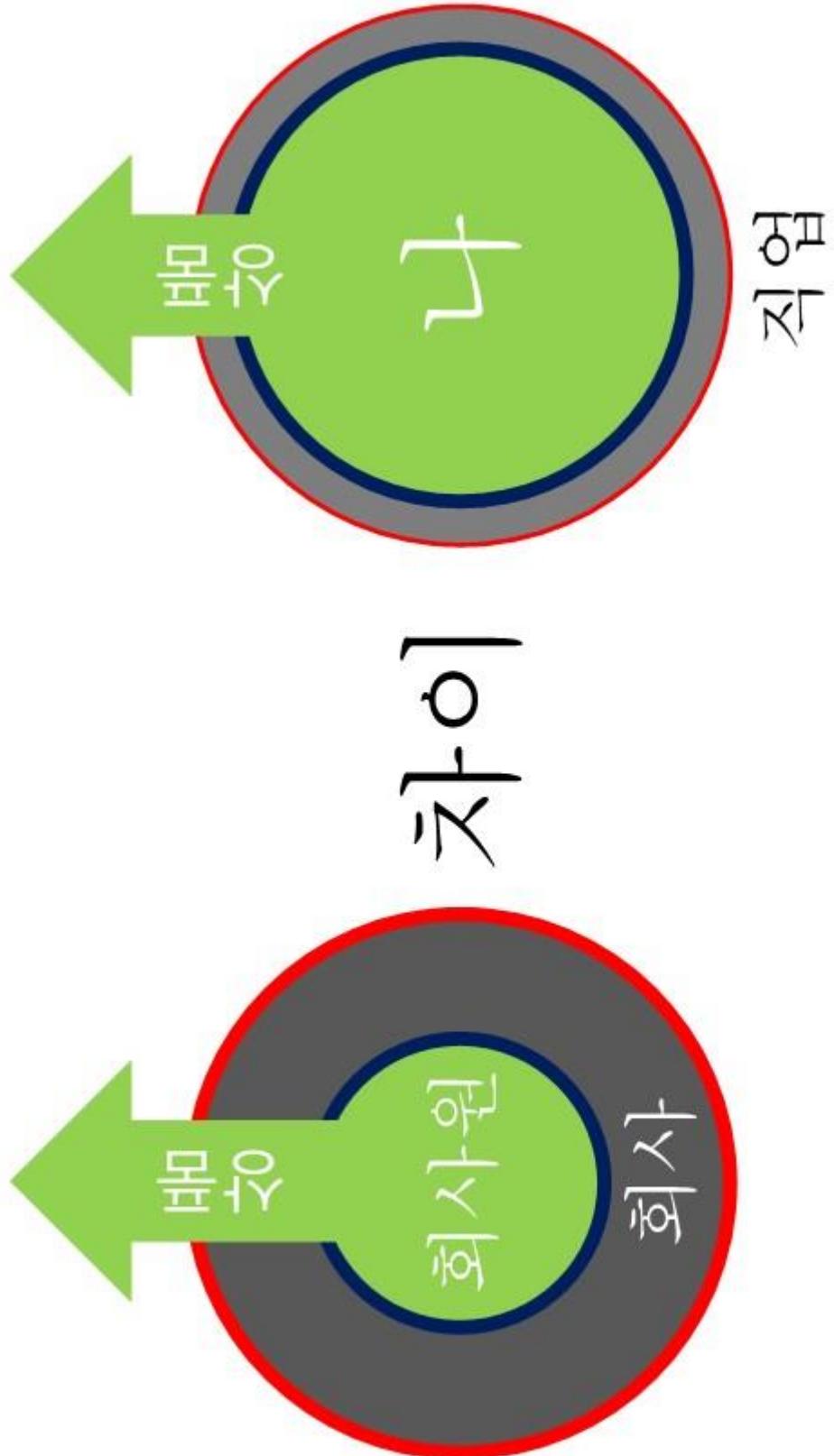
문제 인식 과정에서 여러 리서치를 사용하셨지요. 이것은 사람을 이익 집단으로 규정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①②③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입체적 자기 인식 과정입니다.
④는 그 결과로서 드러난 (진정한) 자기가 담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문디자인 역량입니다.

1단계 : 문제 인식 교육 과정

사장(세상)



2단계 : 개념의 상품화 교육 과정

- 문제 해결 역량 향상 과정 -



①②③④는 점진적 혁신 과정입니다.

①③④를 중시하는 것이 급진적 혁신 과정입니다.
②는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문디자인 역량입니다.

상상

속에서

있으면

그 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그 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제25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국회의 회의 운영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목 차

I. 개 관	49
1. 회의운영의 개념	49
2. 회의 관련 용어	50
3. 회의의 일반원칙	53
4. 회의의 4대 기본요소	61
II. 본회의 운영	62
 제1절 사전준비 절차	62
1. 집 회	62
2. 회기 결정	63
3. 의사일정 작성	64
 제2절 본회의 진행순서	67
1. 개의 선포	67
2. 본회의 보고	69
3. 의사일정 상정	69
4.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69
5. 질의 및 토론	70
6. 표 결	72
7. 산회 선포	78

제3절 국회법상 발언 및 질문제도	79
1. 발언의 원칙	79
2. 발언의 종류와 질문제도	80
 III. 위원회 회의 운영	 82
1. 기본 원칙	82
2. 위원회 회의의 종류	82
3. 위원회 안건심사절차(전체회의)	85
 IV. 기타 국회법의 회의관련 주요 규정	 87
 【 참고자료 1 】 법률안의 처리절차	 94
【 참고자료 2 】 예산안 및 결산 처리절차	95
【 참고자료 3 】 임명동의(승인)안의 처리 및 인사청문회 절차	96
【 참고자료 3-1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비교 ..	97
【 참고자료 4 】 회의록으로 살펴본 특이한 회의 사례	98



I. 개관

1 회의운영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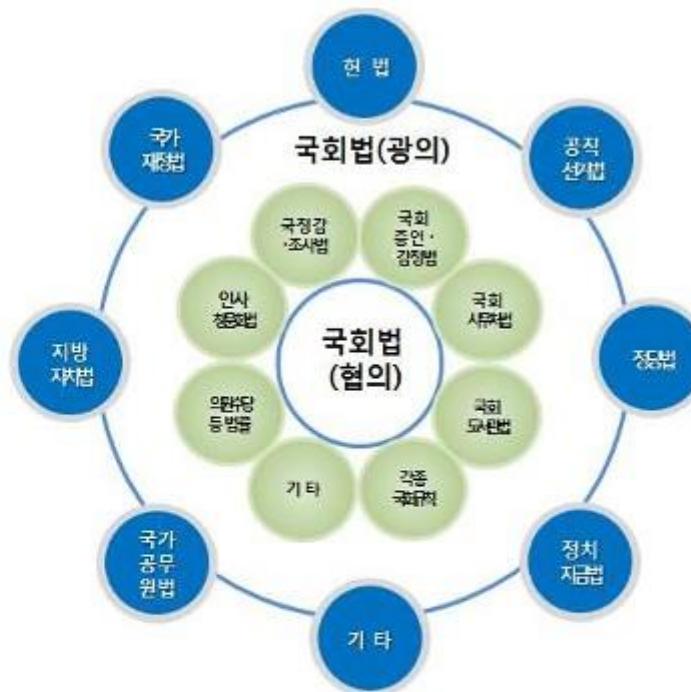
❶ 회의운영 또는 의사진행이란 무엇인가?

- 회의체가 일정한 룰(Rule)에 따라 안건 등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 「국회법」이 정한 룰(Rule)의 탐구 → 「회의운영 강의」
(cf) 「간담회」와 차이

❷ 국회 회의의 종류

- 본회의
 - 위원회회의 : 전체회의·소위원회회의·공청회·청문회·정례회의·연석회의 등
 - 전원위원회회의
- (cf) 「국정감사」와의 차이 : 회의(×), 정족수 원칙(×), 단 위원장 직무대행(○)

<국회법 개념 천체도>



2 회의 관련 용어

○ 국회의 「대(代)」 수와 「회(回)」 수 및 「차(次)」 수

- 「대」 수 : 의원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만료시까지 “임기단위”
- 「회」 수 : “국회의 기본활동단위”, 제헌국회이래 계속해서 일련번호 부여
- 「차」 수 : 하루의 회의에 하나의 「차」 수 부여, 1일 1차 회의 전제

○ 개회와 폐회

- 한 회기가 시작되는 것을 「개회」
-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폐회」

○ 개의와 산회

- 하루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
- 하루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산회」

✓ 국회법상 「개의」와 「개회」의 의미 혼용(국회법 제52조)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 정회와 속개 및 유회

- 회의를 잠시 중지하는 것을 「정회」 → 국회법상 “회의의 중지”로 표현(국회법 제73조 제3항)
- 중지되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
- 예정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유회」

✓ 자동유회와 유회선언(국회법 제73조 제2항)

- 자동유회 : 개의 예정시부터 그날 자정까지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유회선언 : 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❸ 휴회와 회의재개

- 「휴회」는 회기중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본회의를 열지 아니하는 것
→ 본회의 의결 필요(국회법 제7조 제1항)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 별도의 휴회결의 없이 본회의 개의하지 아니함.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전일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제의)”
의결 필요

(cf) 토요일 : 휴회결의 필요

- 「회의재개」는 휴회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해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
- 회의재개 사유(국회법 제8조 제2항)
 - (i) 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경우
 - (ii)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iii) 재적 1/4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재개한 경우 휴회잔여기간에 대한 그 전의 본회의 의결은 효력이 소멸되므로, 필요시 새로이 휴회결의 하는 것이 관례

❹ 「부의」와 「상정」

-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 「상정」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정식의제로 삼아 심의시작을 선포하는 행위,
즉 부의를 구체화시키는 행위

❺ 안건과 의안 및 의제

- 「안건」은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용어
- 「의안」은 안건 중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춘 것
(「안」과 제안이유, 발의정족수 등)
- 「의제」는 의결여부를 떠나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각 항의 제목

❸ 「협의」와 「합의」

- 「협의」는 권한을 가진 자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을 가진 자가 최종적인 결정
- 「합의」는 의견 불일치시 결정 불가능

국회법상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권한

- (i) 1일 1차 회의 예외(국회법 제74조)
- (ii)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국회법 제85조①, 제86조②)
- (iii)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의 적용 예외(국회법 제85조의2⑧)
- (iv)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 예외(국회법 제85조의3②)
- (v)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6조④)
- (vi) 본회의 수정안 제출 예외(국회법 제95조⑤)
- (vii) 교섭단체대표연설 추가 실시(국회법 제104조②)
- (viii) 전자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실시(국회법 제112조⑨)

❹ 원(院) 구성

-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
-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장 선출 등을 의미

❺ 기타

- 발의·제출·제안·제의 : 흔용(헌법 제52조, 제128조, 국회법 제79조, 제75조)
- 원안·수정안·대안·위원회안

3 회의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가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의 회의과정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 보도의 자유(국회법 제149조의 2) · 방청의 자유(국회법 제152조)

헌법 제50조 제1항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제75조 제1항 :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에도 준용

● 본회의 비공개 사례

- 제헌~제10대 국회 : 총 52건, 제11대~제18대 전반기 : (0), 18대 후반기 : 17건(아래)
- 제18대 국회 비공개 본회의 사례 :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에서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 영철의원외 12인 서면동의)」을 의결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

(cf) 징계에 관한 회의 비공개 원칙

국회법 제158조(징계의 의사)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제163조 제5항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cf)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간사선임의 건」 등은 언론취재 편의차원에서 공개회의로 진행

나 정족수의 원칙

1) 의사정족수

- ❶ 회의를 개의하거나 개의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출석의원 수
 -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출석(국회법 제73조) : 국회의 모든 회의체 동일
 - 재적의원 산정 기준 : 보임되지 않은 경우나 의원직 상실 등 궐원된 경우 제외

● IMF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례

- 조사계획서상 특위 위원수 20인,
- 한나라당 배정 9인 선임요청하지 않음,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11인만 선임
- 11인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 진행

● 의사정족수 미달시 조치 사항

- 개의시로부터 1시간 경과시까지 의사정족수 미달시 : 유회선포 가능(국§73②)
- 회의중 의사정족수 미달시(국§73③)
 - 원 칙 : 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 예 외 :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총족요청이 없으면 회의진행 계속 가능

2) 의결정족수

● 일반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 (cf) 다수결 원칙
- 가부동수의 경우 : 부결(※ 제5대 국회까지는 의장이 결정)

✓ 제헌국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 의사정족수 : 헌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실무 관행상 과반수 출석해야 본회의 개의 → 회의지연 폐단 발생
→ 제5대 국회 1961년 국회법 개정시 의사정족수 제도 도입(당시 재적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헌법 제36조('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가결, 부결 모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또는 반대)를 필요로 했음
→ 찬성, 반대 모두 과반수 미달시 미결(未決)
→ 제6대 국회 이후 현행과 같이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정

● 특별 의결정족수

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개정안의 의결(헌§130①)(※ 사사오입 개헌 사례 : 뒷장 참조)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65②)
- 의원의 제명(헌§64③)
- 의원자격상실의 결정(국§142③)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의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④)

※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관련 발언록

✓ 자격심사와 제명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 필요 여부

- 국회법 제142조(자격심사 의결)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 제64조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국§85의2①)
-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국§106의2⑥)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의장·부의장의 선거(국§15①)
- 계엄의 해제요구(헌§77⑤)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헌§63②)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65②)

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헌§53④)
- 번안동의의 의결(국§91)

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

- 국회의장·부의장 결선 투표(국§15③)
- 임시의장 선거(국§17)
- 상임위원장(국§41②)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45④)·윤리특별위원장 선거(국§46④)

⑥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국§63의2④)

<사사오입 개헌(제2차개헌) 관련 본회의 회의록>

제3대 제19회 제90차(1954.11.27) - 사사오입 개헌 전 (무기명투표)

1. 헌법개정안

.....(중간 생략).....

○부의장(최순주)(중간 생략).....

(하오4시22분 부표개시)

(하오4시45분 부표완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석 202인 가운데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부결되었습니다

(장내소연)

(하오5시7분 산회)

< 제3대 제19회 제91차(1954.11.29) - 동의안 제출 >

○의장(이기봉) 유순식의원의 열아홉분으로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읽겠습니다.

동의안

제1(주문) 헌재적의원의 3분지2는 135명이며 따라서 135명의 찬성투표로써 개헌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제2(주문) 11월 27일 제90차 본회의에서 사회자인 최순주부의장이 “찬성 135표이므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포를 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회의록은 찬성자 135표로써 개헌안은 가결되었다고 수정함.

< 제3대 제19회 제91차(1954.11.29) - 사사오입 개헌 (거수표결) >

1. 헌법개정안정족수에관한건

○부의장(최순주)(중간 생략).....

지난 11월 27일 제90차 회의 중에 헌법개정안 통과여부 표결결과 발표 시에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족수의 계산상 착오로서 이것을 취소합니다

제석 203명의 3분지 2는 135표로써

.....(중간 생략).....

통과됨이 정당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4항에 의하여 가결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중간 생략).....

(이철승의원 의장석에 등단하여 최부의장을 잡아끌면서 「내려와 내려와」라고 고함) 동시에 의사록의 경정을 요구합니다

(단상에 다수의원 올라가서 혼란)

.....(중간 생략).....

○의장(이기봉)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유순식의원의 열아홉 분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3대국회 의석수 : 203명, * 202명의 2/3는 134.66, 203명의 2/3는 135.33

3)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의 기준과 출석인원이 재적과반수 미달시 조치사항



전자투표의 경우

- 전자 투표시 의원은 본회의장 입장 후, 재석버튼 + 찬·반투표버튼
→ 전광판에 표출되는 재석인원을 기준으로 출석수 산정, 재적과반수 넘을 때 투표종료 선언(단상 투표종료버튼) → 찬·반결과 발표
-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으나, 재석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경우 그 투표에 한해 출석 불인정, 재석버튼만 누르고 찬반투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은 인정되고, 기권으로 표출
- 투표인원이 재적과반수 미달시,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투표불성립 선포
→ 다음 회의에 다시 투표 실시

● 실제투표참여가 아닌 회의장 입장을 기준으로 출석수 산정한 사례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합당 투표 : 2011. 12. 11. 전국대의원대회)

- 재적대의원수 : 10,562명, 재적과반수 : 5,281명
- 표결시 회의장 입장인원은 재적과반수가 넘는 5,820명, 표결선포 후 실제 전자투표참여인원은 재적과반수에 214명 미달되는 5,067명 → 찬성 4,427명(76%), 가결 선포 → 의결정족수 논란
- (민주당 당무위원회 해석) : 회의장 입장을 기준으로 출석수 산정, 회의장 입장은 했으나 투표참여하지 않은 753명을 기권으로 해석

● 투표인원이 재적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 선언 후, 투표불성립 선포한 사례 (방송법 개정안 강행처리 사례 : 2009. 7. 22.)

- 투표종료 선언 후 종료버튼, 재적과반수(150명)에 미달되는 145명 투표 참여(전광판에 찬성 142인, 기권 3인 표출) → 투표불성립을 선포한 후, 즉시 재투표 실시 후 가결(재석 153인, 찬성 150인, 기권 3인) 선포
- 헌법재판소의 해석
 - (ㄱ) 투표종료선언 후, 투표인원이 재적과반수 미달이면 부결이므로, 재투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침해(5인), 투표인원이 재적과반수 미달이면 유효한 투표로 볼 수 없음(4인).
 - (ㄴ) 방송법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과 관련하여 표결권과 일사부재의 원칙 침해했으나 다수결 원칙과 회의 공개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기각 : 7인).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절차위반으로 가결선포행위 무효(인용 : 3인)



기명·무기명투표의 경우

● 투표종료 선언 후, 명패수 계산하여 그 명패수 기준으로 출석 산정

→ 명패수가 재적과반수 미달시, 투표수 집계하지 아니하고 투표불성립 선포 → 다음 회의에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투표실시

● 사례 : 국무총리(김황식)해임건의안(박지원 의원외 126인 발의) 처리 사례

- 제19대국회 제309회 본회의 제7차 본회의(2012. 7. 20.)에 상정, 투표종료 선언 후, 명패수 계산결과 명패수가 138매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 → 투표수는 집계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 선포, 산회 → 본회의 보고(2012. 7. 18. 10시) 후 72시간 경과로 폐기 처분

● 명패함과 투표함 봉인 사례

대	회	차	회의일자	의사일정	투표	비고
15대	189	1	1998. 3. 2	- 국무총리(김종필) 임명동의의안	투표 미종료	자동산회 투표함 봉인
	195	9	1998. 8.17	- 국무총리(김종필) 임명동의의안(계속)		재투표
16대	220	11	2001. 4.30	- 국무총리(이한동) 해임건의안 -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 해임건의안	개표 선포 후 개표 반대	명패함 · 투표함 봉인 → 폐기
	225	22	2001.12. 8	- 검찰총장(신승남) 탄핵소추안	감표위원 불참 이유로 한나라당이 개표불가 요구 ※한133, 민115, 자민17, 기타8	명패함 · 투표함 봉인 → 2001.12.9 자동폐기



이의유무·기립표결의 경우

● 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수 기준으로 출석수 산정, 재적과반수 넘을 때 표결 실시

(cf) 본회의장 휴게실(x)

● 본회의장의 범위에 관해 언급된 본회의 사례

- 제16대국회 제234회 정기회 제13차 및 제 14차 본회의(2002. 11. 7~8)에서 이의유무를 물어 총 131건의 안건을 의결 → 언론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효 주장 제기
- 그동안 본회의장내의 휴게실에 있는 의원도 포함하여 출석수 산정하는 것이 관례 (본회의장 개념 확대 해석)
- 박관용의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11월 12일 제15차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등 4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재의결

▣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한 안건의 의결정족수문제로 가결선포를 취소한 사례

- 제2대국회 제18회 제31차 본회의(1954. 3. 8.)는 「경범죄처벌법안」 제2독회에서 제1조 제31항에 대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있어 재석의원수를 점검한 결과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가결선포를 취소하였음.

○ 부의장(조봉암) 이의없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럼 그대로 됩니다.

(「성원 안돼요!」하는 이 있음)

잠간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똑똑히 세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죄처벌법 제31호부터 시작했는데 31호를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통과한 일이 있음 니다만 다시 재석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69명밖에 안되어서 이 31호 통과되었다는 것은 취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번 말씀이 있읍니다만 이거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읍니다만 성원 못 되기 때문에 유회합니다.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국회법 제92조)

- 안건이 회의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cf) 가결되면 → “번안” 절차 허용(국회법 제91조)

(cf) 동일한 내용의 기준 : 안건마다 실제 적용 차이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的 경우 이유와 목적을 달리하면 동일 대상에 대해서도 가능

(cf) 소위원회에서는 재논의 후 번복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 사례 :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

- 2011. 4. 15, 「한-EU FTA 비준동의안」 기립표결 선포 → 재석 61인중, 찬성기립시 위원장 포함 3인이 기립하고, 동시에 1인이 “나는 기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어나 퇴장하는 순간, 위원장이 가결 선포
- 민주당에서 부결 주장 등 의결정족수 논란 일자, 전체회의에서 직접 논의 후 가결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례 : 다음 회의에서 재의결

- 2008. 9. 12, 200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가결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논란 제기(투표 참여의원 중 1인이 공식적으로 예결위원으로 보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표참여), → 2008. 9. 17. 회의를 열어 동 안건에 대해 재의결하여 가결함.

※ 위원개선 공문의 효력 : 국회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수신자(위원회, 교섭단체)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

라 회기계속의 원칙(헌법 제51조)

- 국회의원 임기만료시를 제외하고는 안건이 회기 내에 의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음.
 - 매번 회기마다 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제성 문제
- ※ 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 유지(회기독립원칙)

✓ 국회법 및 관례상 안건 폐기가 인정되는 경우(회기계속 원칙의 예외)

- (i)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제87조)
- (ii) 처리시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의제된 의안(제112조 제7항, 제130조 제2항)
- (iii)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의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 처분

예시 국회의원 정계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의원이 퇴직한 경우,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 후 해당 의원 불구하고 되거나, 본회의 보고후 72시간이 경과한 경우,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 되었으나 해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된 경우

마 1일 1차 회의 원칙(국회법 제74조제2항)

- 하루에 한 차례의 회의만을 열 수 있다는 원칙, 즉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는 원칙
 - 관례로 운영되다가 2010. 5. 28. 국회법 개정시 명문화
 - 예외 :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시 2차 회의 가능(국회법 제74조제2항 단서), 무제한 토론시 산회 없이 회의 계속(국회법 제106조의2 제4항)

● 1일 2차 본회의 개의 사례

- 제3대 국회 제19회 임시회 제31차 본회의(1954. 8. 18.)를 개의하여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형사소송비용법(제1, 2독회)」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였으나,
- 휴회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동일 제32차 본회의를 열어 「유엔군 일부철수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처리

● 재적 1/4 요구로 위원회 개회되었으나, 위원장이 이전 회의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당일 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회한 사례

- 제18대 국회 제28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8. 7. 1)에서 조원진의원 외 7인의 요구로 위원회가 개회되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개회시간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국회법 제50조제5항), 조원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보며 소관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후 산회
- 당일 저녁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이전 회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의사진행 발언 후 산회

4 회의의 4대 기본요소

❶ **의사** : 회의의 진행행위(“본회의 운영”과 “위원회 회의 운영”)

❷ **의안** :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 (참고자료) 각종 의안 처리절차

❸ **속기** : 회의의 과정 기록

- 회의기록은 부호문자를 사용하는 속기방법 원칙(국회법 제115조 제2항)
-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 내용 삭제 불가, 자구정정 또는 취소 발언의 경우 그 발언 게재 (국회법 제117조 제3항)
- 회의록 배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정정 요구 가능(국회법 제117조 제1항)
-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불게재 가능(국회법 제118조 제1항)

❹ **경위** : 회의의 질서유지

✓ **경호권** : 회기중 국회의 질서유지 위해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국회법 제143조)
→ 명령 및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

※ 폐회중이라도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

✓ **협의의 질서유지권** : 회의장 내에서 회의의 질서유지 위해 행사하는 권한,

예시 경고 또는 제지 → 불응시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 회의중지 또는 산회선포(국회법 제145조), 방청석 질서유지(154조) 등 → 위원회의 경우 실력행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 요청

(cf) 국회법 제10조의 질서유지권은 광의의 개념으로 경호권과 협의의 질서유지권 등 포함

(cf) 「의원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회기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행사 가능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경찰관 파견 요청 가능

※ **회의장** : 국회법은 회의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제1회의장(본회의장), 제2회의장(예결회의장), 제3회의장(본청245호), 제4회의장(본청246호), 위원회 회의장



II. 본회의 운영

제1절 사전준비 절차

1 집회

가 종류 : 정기회와 임시회

나 집회 요구(임시회) :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헌법 제47조제1항)

(cf) 대통령 요구시에는 집회요구 이유와 기간을 명시,

의원 요구시에는 집회일시와 이유만 명시

*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법정 집회(국회법 제4조)

다 집회 공고 : 집회일 3일전까지 공고, 국회 정문 입구 게시판에 공고,
2개 이상 집회 요구시 집회일이 빠른 것 공고

◎ 집회 공고(예시)

국회공고 제0000-0호

제000회 국회(임시회)(정기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〇〇〇.〇〇〇 외 000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000회 국회(임시회)(정기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년 월 일(요일) 오후 시

장 소 : 국회의사당

년 월 일

국 회 의 장 ○ ○ ○

✓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과 집회 공고 문제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후단 :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국정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실무적으로는 국정조사요구서와 집회요구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있음.

2 회기 결정

가 회기란 : 국회의 활동기간

나 회기 결정

●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국회법 제7조)

- 정기회는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헌법 제47조제2항)

- 교섭단체간 사전협의 → 국회운영위원회 제안 또는 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

< 역대 국회 연간 회기 일수 >

대	기간	정기회	임시회	연간회기일수	회기연장	근거
제헌~5대	1948. 5.31~1960. 9.25	90일	30일 이내	제한없음	의결로 제한없이 연장 가능	국회법
5~5대	1960. 9.26~1961. 5. 3	120일	양원일치의결(양원불일치시 민의원의결에 따름)	제한없음	"	국회법
6~8대	1963.12.17~1972.10.17	120일 이내	30일 이내	제한없음	법정기간 내에서 의결로 연장 가능	헌법
9~12대	1973. 3.12~1988. 2.24	90일 이내	30일 이내	정기회와 임시회 합하여 150일	"	헌법
12~현재	1988. 2.25~현재	100일 이내	30일 이내	제한없음	"	헌법

※ 원 포인트(one-point) 국회를 여는 경우, 회기 마지막 날에 회기 결정

● 회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 동안 계속

✓ 회기와 관련된 실무 상식

- (i) 집회요구서에는 회기를 적시하지 아니함.
- (ii) 법정일수 내에서는 회기연장의 횟수 제한 없음.
- (iii) 휴회일수도 회기에 산입
- (iv)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별 없이 회기마다 순차로 제 몇회국회라 칭함.
- (v) 상임위원회는 회기별로 차수 부여하고,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회한 경우 바로 앞의 회기로 하여 일련 차수 부여
- (vi) 일반특별위원회(국회법 제44조)는 회기와 상관없이 구성된 때부터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일련차수 부여

3 의사일정 작성

가 의 미

● 의사일정이란 : 의사진행의 예정서

○ 종 류

- 회기전체 의사일정 : 회기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안건의 대강 기재
- 당일 의사일정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안건의 순서 기재

※ 회기전체 의사일정(예시)

제278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08. 2. 1 ~ 3. 2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2. 1(월) 14:00	개 회식	
개회식 직후	1.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 3. 안건처리	◦ 2. 1 ~ 3. 2 (30일간)
2. 2(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 3(수)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4(목) 10:00	1. 정치에 관한 질문	
2. 5(금) 10:00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 6(토)	휴 회(1일간)	◦ 위원회 활동
2. 7(일)	공 휴 일	
2. 8(월)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2. 9(화)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2. 10(수) 10:00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휴회결의	◦ 2. 11 ~ 2. 24 (14일간)
2. 11(목) ~ 2. 24(수)	휴 회 (14일간)	◦ 위원회 활동
2. 25(목) 14:00	1. 안건처리	
2. 26(금) 14:00	1. 안건처리 ※ 휴회결의	◦ 2. 27 ~ 3. 2 (4일간)
2. 27(토) ~ 3. 2(화)	휴 회 (4일간)	◦ 위원회 활동

※ 당일 의사일정(예시)

의사일정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07년 9월 11일(화) 14:00

※ 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26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
3. 200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4.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최경숙) 선출안

※ 휴회결의 : 2007. 9. 12. ~ 9. 19. (8일간)

나 의사일정의 작성

- 전체의사일정 :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국회법 제76조 제3항)
- 당일의사일정 : 의장이 작성하되, 관례적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안건

- (i) 휴회 결의
- (ii)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 (iii) 위문금 각출의 건

– 의장은 작성된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공표(국회법 제76조 제4항),
다만 긴급시 회의일시만 통지(국회법 제76조 제5항)

다 의사일정의 변경(국회법 제77조)

-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와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 가능(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라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당일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 → 다시 그 일정을 정함.

❸ 사례 :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사례

- 제16대 국회 제245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2004. 3. 2.)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처리시 나중에 제출된 양승부의원 외 60인 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종료하고, (장내소란 중) 투표결과를 발표하던 중 의장(박관용)이 산회를 선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95인, 반대 40인, 기권 29인
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이 김덕규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투표를 한 것입니까? 양승부 의원안에 대해서.....” “속기록 확인 해봐요.....
(자정이 지나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 3. 9.)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상정하여, 의사진행발언(정개특위위원장 이재오의원)과 신상발언(이강래·정세균·김태식·양승부·의원)후 → 김덕규의원 등 33인 발의 수정안 철회(이의유무로 표결) → 양승부의원 외 60인 발의 수정안 표결후 부결(재석 167인 중 찬성 72인, 반대 65인, 기권 30인) → 원안 표결후 가결 선포(재석 169인 중 찬성 116인, 반대 31인, 기권 22인)

✓ (cf)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 (i) 1년간의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 일정
- (ii)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
- (iii) 회기전체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iv) 작성 기준
 - 매 짹수월(8,10,12월 제외) 1일에 임시회 집회
 - 임시회 회기중 1주는 대정부 질문
- (v) 꽉수월에 당연히 임시회가 집회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야함.

제2절 본회의 진행순서

개의선포 → 본회의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 질의 및 토론 → 표결 → 산회선포

✓ 개회식 거행 문제

- (i) 집회일에 개회식 거행 원칙, 다만 임시회의 경우 생략 가능(국회법 제6조)
 - 2005년부터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개회식 거행
- (ii) 초청대상 : 임시회의 경우는 국회내부인사만 초청, 정기회는 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 등 초청(국회사무총장명의로 발송)
- (iii) 폐회식 : 제4대국회까지는 회기만료일 또는 악일에 폐회식 거행, 1960년 9월 26일 국회법 개정으로 폐회식 조항 삭제

1 개의 선포

가 의 미 : 회의시작을 알리는 행위

나 개의 요건

- 의사정족수(재적 1/5이상 출석) 총족, 단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총족 후 개의

다 개의 시간

- 평일 : 오후 2시, 토요일 : 오전 10시,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국회법 제72조 및 단서)
-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의 경우 평일에도 오전 10시 개의(관행)

2 본회의 보고

가 의 미 : 개의선포 직후 의안제출상황 및 회의관련 필요사항을 의장이 의원들에게 보고

- 통상 의사국장의 보고사항으로 갈음, 구두보고 후 회의록 게재가 원칙이나,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이 있는 경우 구두보고 생략하고 회의록 게재
- 필요시 회의중간에도 보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또는 의원체포동의안 제출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국장 보고 후 의장이 중복 보고하기도 함.

● 중복 보고 사례 : 2013.2.26. 본회의 개의직후

-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김영주)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리시한이 정해진 안건 : 본회의 보고시점이 안건 심의의 기준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국회법 제112조 제7항, 탄핵소추안(국회법 제130조 제2항)의 경우, (cf) 의원체포동의안(국회법 제26조제2항)
-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 시한 경과시 폐기 간주

✓ 보고만을 위한 본회의 개의 가능 여부

- 본회의는 상정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의하며, 원칙적으로 보고사항만을 보고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함.

예외 사례 2007. 12. 10. 김효석의원 외 140인으로부터 검사(김홍일) 탄핵소추안 등 3건의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고 국회법 제130조2항에 따라 제2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7. 12. 12.)에서 탄핵소추안만 보고한 사례가 있음.

✓ 5분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만을 위한 본회의 개의 불가

- 2001년 1월 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교섭단체간에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함에 따라 한나라당대표의원으로부터 당일 5분자유발언 실시를 위한 본회의 개의요청이 있었으나, 의장은 의사일정이 없이 5분자유발언만을 하기 위한 본회의는 개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를 거부함.

3 의사일정 상정

가 의 미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정식의제로 삼아 심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위

나 1 의사 1 의제 원칙 : 1개 안건씩 상정, 필요시 일괄 상정

수정안은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

다 "약칭"하여 상정 가능한지의 여부(사례 : 213자 → 13자)

- 제16대국회 제218회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2001. 2. 28.)에서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개정협정,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및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비준동의안」의 의결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이 의원의 양해를 얻어 의사일정 상정시 이외에는 안건명을 「한·미SOFA개정협정비준 동의안」이라고 약칭하였음.

4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가 보고내용 :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 의견 등 필요한 사항
(국회법 제67조 제1항)

나 보고자

1) 원칙 : 위원장의 구두 보고

2) 예외 : 위원장이 지정하는 의원(국회법 제67조 제2항), 필요시 단말기 대체

※ 보충보고 : 위원장은 소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67조 제3항)

5 질의 및 토론

가 질의

- 1) 개념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것
(cf) 질문과 상이 : 정부에 대하여 국정에 대해 설명이나 소견을 요구하는 것
- 2) 시간 : 통상 5분 이내로 운영
※ 국회법 제104조 제1항 : 발언 시간은 15분 이내에서 의장이 정함.

나 토론

- 1) 개념 :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 2) 토론신청(통지) :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 3) 토론 실시 :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되되, 반대자 먼저 발언하게 함.
- 4) 시간 : 통상 5분 이내로 운영
- 5) 토론을 하지 않는 경우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비공개회의의 동의(動議)(국회법 제75조)
- 의사일정변경의 동의(動議)(국회법 제77조)
- 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動議)(국회법 제108조)
- 회의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국회법 제117조 제4항)
- 의원사직의 허가(국회법 제135조 제3항)

(2) 관례에 의한 경우

- 인사에 관한 안건 : 선거 및 선출안, 국회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 안건처리 보류의 동의(動議)
- 회의중지(정회) 또는 산회의 동의(動議)

6)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의원의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함.

※ 질의 또는 토론종결 동의 :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動議)가 있는 경우,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선포(국회법 제108조 제2항)

✓ 의장의 토론 참가(국회법 제107조)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음.
-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가능

다 무제한 토론(filibuster)(국회법 제106조의 2)

1) 대상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관례적으로 토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

2) 요건 : 재적의원 1/3 이상 서면요구

3) 특례

- (i) 발언시간 제한 : (x) 안건당 1인 1회에 한하여 무제한 토론
- (ii) 1일 1차 회의 제한 : (x) 산회 없이 계속 회의
- (iii) 의사정족수 제한 : (x)
- (iv) 토론종결동의 요건 : 재적 1/3 이상 서면 동의 → 제출 24시간 경과후 무기명 표결 → 재적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

4) 한계 : 회기 종료시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간주 → 다음 회기에서 자체 없이 표결

※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 12월 1일 자정까지 가능

6 표 결

가 표결의 선포

- ❶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국회법 제110조 제1항)
※ 의장석의 범위에 대한 논란
- ❷ 표결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해 발언 금지(국회법 제110조 제2항)
- ❸ 본인확인 투표제 도입(2010. 5.) : 재적 1/5 이상 요구시(국회법 제112조 제8항)

❹ 대리투표 논란 사례

(i) 2005. 12. 9. 사학법 개정안 처리시

-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의 열린우리당 의원들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열린우리당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출되느냐고 대리투표 의혹 제기

(ii) 2009. 7. 26. 방송법 개정안 처리시

- 민주당에서 어떻게 자리에 없던 자당 소속 의원(강봉규의원)이 전광판에 재석의원으로 표출되느냐고 대리투표 의혹 제기
- 일부 의원 대리투표 하는 듯한 모습 포착(국회 본회의장 CCTV)
- 현재 결정 :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5인), 일부 비전형적인 투표가 있었더라도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4인).

나 표결 방법(종류) (국회법 제11조)

1) 전자투표 : 원칙적인 표결방법

- ❶ 전자투표 원칙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음.
→ 제16대국회 제234회 정기회 제13차 및 제14차 본회의(2002.11.7.~8)에서 의결한 131건의 법률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문제 제기되어, 그 중 47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재의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자투표의 본격적 실시
※ 최초의 전자투표 : 제15대국회(1999.3.9.), 약사법 개정안 처리

2) 기립표결 : 기기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4) 무기명투표

- (i) 각종 선거(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 (ii)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재의결
- (iii) 인사에 관한 안건(해임건의안 등), 단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 제외

< 인사안건을 무기명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결한 사례 >

대	회	자	회의일자	의사 일정	표결방법	비고
9대	99	5	1978. 3.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출	이의유무	3인 선출
14대	161	11	1993. 5.19	-국무총리(유창순)해임권고결의안(임종기의원 이동진의원 김정수의원외 118인 발의)	기립표결	부결

※ 인사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 1952년 9월 국회법 개정시 도입

- (iv)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 미합의시 표결
- (v)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표결

※ 무기명투표방식 : 가·부(可否) 기재방식과 설명 기재방식, 단기식과 연기식

※ 연기식 투표 : 하나의 투표용지에 수개의 단기식 기재란 포함 → 절단기 사용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시 전자무기명 투표 가능(2010. 5. 28. 도입)

무기명·기명 투표용지 양식(뒷면)

<기명 투표용지 >

의원성명란	가·부 란
권 영 진	

<무기명 투표용지(단기식 기명란)>

	기 명 란

<무기명 투표용지(단기식 가부란)>

	가·부 란

5) 이의유무확인 : 의장이 결정, 단, 이의 있으면 전자투표 등 실시

◉ 이의유무확인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하고, 가결선포한 사례

- 제14대 국회 제15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1992. 11. 4.)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의결시, 의장은 이를 안건이 교섭단체간에 합의 처리된 안건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3인(박찬종·강창희·송천영)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기립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가결 선포

○ 의장 박준규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정치관계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 간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된 안건이기 때문에 박찬종 의원만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고 구두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기록만 하시지, 그 사람만.

강창희 의원, 또 없으십니까? 또 송천영 의원, 그러지요. 세 분의 반대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대통령 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 분 제외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반대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이의유무 표결한 사례

- 제15대 국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8. 4. 24.)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의장이 안상수 의원에게 기립표결여부를 타진하고 이에 안상수 의원이 찬반의원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 처리함.

6) 호명투표 : 제14대 국회 때(1994. 6. 28.) 도입, 실시한 바 없음

(cf) 거수 표결 : 위원회에서만 가능(국회법 제71조)



표결방법 변경 요구

- (국회법 제112조 제2항)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두 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례

대별	일자	안건명	표결방법 변경요구	표결결과	비고
15대	2000.2.8. (210-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 법률안	전자투표 (박상천 의원 외 102인)	가결	전자투표로 의결
			무기명투표 (이부영 의원 외 130인)	표결하지 않음	
	1996.12.26 (182-1)	국가안전기획부 법 중 개정 법률안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무기명투표 (야당 - 국민회의)	부결	모두 부결되어 이의유무로 의결
			기명투표 (여당 - 신한국당)	부결	
16대	2004.2.9. (245-4)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 동의안	무기명투표 (홍사덕 · 김근태 의원 외 54인)	부결	모두 부결되어 이의유무로 의결
			기명투표 (이정일 의원 외 57인)	가결	

다 표결 순서

-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개의 안건씩 표결 원칙
- 수정안 표결순서(국회법 제96조 제1항)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함.
※ 단, 각기 다른 조항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나머지 수정안도 표결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96②).

라 표결의사 변경 금지

- ❸ (국회법 제111조 제2항) 의원은 표결에서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❹ (실제) 전자투표의 경우 의원정정신청서 접수 후 변경

마 표결결과 선포

- ❺ 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결과 발표(국회법 제113조)
- ❻ 무기명·기명 투표의 개표 및 투표결과 집계
 - (i) 투표 종료시 의장은 개표 선포
 - (ii)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의사직원이 명패수 계산, 의장 보고
 - (iii) 의장이 명패수 발표(본회의 보고)
 - (iv) 의사직원이 투표수 계산, 의장 보고
 - (v) 의장이 명패수와 투표수 일치여부 발표 후 개표 시작
 - (VI) 의사직원 투표결과 집계 후, 의장의 발표

< 표결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상식 >

✓ 피심의원의 표결권 행사 금지

- 의원은 자기의 징계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는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나,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하므로(국회법 제160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무효·기권 판정 기준

□ 무효

- 정해진 표시(가.부 또는 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예시 : “기권”)
- 피선거권이 없는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2인 이상 기재한 것
- 한자 틀린 경우(특히, 否(○)를 조(x)로 표시하는 사례 많음)

□ 기권 :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것

□ 애매한 경우 감표위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의장이 결정

✓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 명패수 > 투표수 :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
- 명패수 < 투표수 : 투표 무효로서 재투표 원칙, 다만 그 차이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투표결과를 집계(국§114③)

✓ 조건부 표결 금지 및 부대의견의 효력

- 표결에는 조건을 붙여서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
- 「부대조건」 또는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경우 종종 발생
- 행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의사표명 수단이며, 법적 구속력 없음. 다만, 국회의 의사(意思)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임.

● 사례 : 제18대 국회 총15건의 정부 제출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

- 부대의견 예시 : 2011. 12. 30. 본회의에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주식매각 등 공적 자금 회수를 통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보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

✓ 의사봉 3타의 의미와 효력

- 무타(기자석, 의원석), 2타(운영위), 4타(-1타)

7 산회 선포

-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산회 선포
- 자정(오후 12시)이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일단 산회하고, 다음날 영시(零時)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새로 개의 원칙, 이 경우 의사일정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재작성

● 본회의 차수 변경시 준비사항 및 사회문안

※ 의원 또는 국무위원 등 발언자가 있을 경우 발언중지 지시

-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할 안건이 남아 있으므로, 회의의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오후 12시 경과 후

-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 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차수변경 전 발언자 계속 발언 지시

제3절 국회법상 발언 및 질문제도

1 발언의 원칙

- ✓ 국회법 제9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104조(발언원칙)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발언 마치지 못한 부분 :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 게재(국회법 제104조 제5항)
- ✓ 제10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국회법 제103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상자료 상영 문제(의장 허가)

- 영상자료가 전광판에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
- 영상자료에 포함된 음향은 제거된 후 상영

✓ 의원 발언시의 복장

● 제6대 국회 제44회 제9차 본회의(1964. 7. 27.) : 본회의 발언시의 복장에 관한 건

○ 의장(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동을 얻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을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그 복장을 누구든지 정복을 하자는 결의을시다. 양복은 상의와 「넥타이」를 매고 한복은 두루마기를 입는 이러한 정도의 정복을 해야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규를 정한 모양 이을시다. 이것은 우리 의사당의 엄숙성과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 결의를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제16대 국회 사례 : 제238회 제8차 본회의(2003. 4. 29.)에서 오경훈·홍문종·유시민 의원의 의원선서 및 인사 직전 유시민 의원의 복장문제로 인해 당일 선서를 못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선서한 후 인사함.

2 발언의 종류와 질문제도

가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보충보고 : 5분 이내

- 의사진행발언 신청시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함(국회법 제99조 제3항).
-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관행)
- 제10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관행) 할 수 있다.

나 반론발언 : 3분 이내

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신청 : 개의시간 4시간 전까지 신청,
- ◎ 실시시기 : 개의시부터 1시간(12인) 범위 내에서 실시,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 허가 가능(국회법 제105조 제1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실시하는 경우 5분 자유발언 허용 않음(관행).

라 교섭단체대표연설 : 40분 이내

- ◎ 연설자 :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 또는 그 정당의 대표
- ◎ 실시시기 :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추가로 1회 실시(국회법 제104조제2항)

(cf) 비교섭단체대표발언 : 15분 이내에서, 2005년 9월부터 실시, 2009년 11월부터는 5석 이상 정당에 한해 실시

(cf) 교섭단체대표발언 : 국회법상 임시회에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실시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제301회 임시국회(2011. 6. 2. ~ 3.)에서 교섭단체대표발언의 형태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15분씩 실시한 바 있음.

마 대정부질문 : 20분 이내(답변시간 제외)

- ❶ 의제 : 통상 4개 의제(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 ❷ 의제별 질문 의원수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
- ❸ 질문 순서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텅지
- ❹ 신체장애 의원의 추가 질문시간 : 신체장애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 허용 가능(국회법 제122조의 2)
※ 제18대 사례 : 정하균의원 3~5분 추가
- ❺ 출석요구서 :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서” 의결, 대정부질문요지서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

바 긴급현안질문 : 주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이내

- ❶ 실시시기 및 대상 :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 사항
- ❷ 요구정족수 :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 ❸ 질문 요구서 제출 :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
- ❹ 실시여부 결정 : 의장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표결로 결정
→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의결 간주
- ❺ 총 질문시간 : 120분(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제18대 국회 긴급현안질문 사례(8차례)

- 쇠고기 협상 및 경찰 진압 관련 긴급현안질문 (2008. 7. 16, 7. 18),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2008. 7. 2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2008. 7. 22, 7. 23), 용산참사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2009. 2. 11.),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2010. 4. 2.),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2010.11. 9.), 원전 안전운영 및 고유가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2011. 4. 8), 김정일 사망과 관련 한반도 안정과 평화 문제에 관한 사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DDoS공격에 대한 사항,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사망사고에 대한 사항 관련 긴급현안질문(2011. 11. 21.)

✓ 국가원수나 외빈 등의 국회 연설시 박수 허용

-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거나 의사일정 없이 의장이 단상으로 초빙하여 연설하도록 유도
- 의원발언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국가원수 등 외빈 관련해서는 박수를 치기도 함.



III. 위원회 회의 운영

1 기본 원칙

- 본회의 의사규정은 위원회에 준용(국회법 제71조)
- 회기에 기속되지 않고 개회 가능
 - 폐회중 월2회(정보위 1회, 운영위 제외) 정례회의 개최 의무화(국회법 제53조)
- 본회의중에는 위원회 개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국회법 제56조)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 회의의 종류

가 위원회 전체회의

나 소위원회 회의

- 1) 특정안건심사소위원회 회의(예시: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 2)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
- 3) 상설소위원회 회의
- 4)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 2)

- ① 대상 및 요구조건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1/3이상 요구로 구성
 - ② 구성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6인(여야 동수) 선임,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 ③ 재적2/3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 의결 → 소위원회 의결로 간주,
 - ④ 활동기한 : 구성일부터 90일(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단축 가능)
- ※ 쟁점 : 요구서 제출시 자동구성 및 자동회부 여부, 조정안 발의와 형태, 철회 가능한지의 여부 등 논란 → 향후 선례 축적을 통해 정립 필요

다 정례회의(국회법 제53조)

- ❶ 폐회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위원회 개회 의무(정보위원회 1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외)
- ❷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심의 등 가능

라 연설회의(국회법 제63조)

- ❸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
-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설회의를 열어야 한다.

- ❹ 회의는 소관위원장이 주재하되, 위원장 사고시 소관위원회 간사가 대리
- ❺ 의사정족수 : 소관위원회 재적 1/5 이상 출석
- ❻ 표결권 여부 : 표결권 없음, 안건의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의미이며, 의사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 가능 → 필요시 소관위원회 별도로 열어 의결

마 공청회(국회법 제64조)

- ❻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 있는 자로부터 의견 청취 목적
 - 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1/3 이상 요구시 개최
-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❽ 안건 심의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 통상 상정 후
 - ❾ 개최 공고 : 명문 규정 없음.

● 공청회의 비공개 개최 가능성 및 사례

-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상 비공개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 및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비공개로 개최(2010. 2. 19.)한 사례 있음.

바 청문회(국회법 제65조)

- ❶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 채택 목적
- ❷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의결로 개최(단, 입법청문회는 재적 1/3 이상 요구로 가능)
- ❸ 개최 공고 : 위원장 명의로, 5일 전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 공고
- ❹ 증인 등 출석요구서 발송 :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

사 전원위원회 회의(국회법 제63조의2)

- ❶ 요구조건 :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시 개최 가능, 교섭단체대표의원 동의를 얻어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❷ 구 성 : 의원 전원으로 구성
- ❸ 위 원 장 :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 ❹ 간 사 : 국회운영위원회 간사(규칙 제4조)
- ❺ 구성시기 : 의장이 전원위원장 지명한 때(규칙 제3조)
- ❻ 개회시기 :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제안설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최초 개회(규칙 제5조)
 - 본회의 산회 또는 정회 후 개회
 - 심사보고는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통상 생략, 바로 대체토론 실시
- ❼ 정 족 수 : 재적 1/5 이상 출석으로 개의, 재적 1/4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❽ 권 능 : 수정안 제출 가능

● 전원위원회 연혁 및 사례

- 제헌 이후 제4대 국회까지 운영(6회 개최),
- 제5대 국회에서 폐지하였다가 제15대 국회(2000. 2. 16.)에서 신설,
- 제16대 국회(2003. 3.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와 제17대 국회(2004. 2. 국군 부대의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에서 각각 1회 실시

3 위원회 안건심사절차(전체회의)

가 입법예고(국회법 제82조의 2)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생략 가능

입법예고시 고려사항

- 회부된 법률안 중 정부법안은 이미 입법 예고를 거쳤고, 대안의 경우 원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한정할 필요
- 의원발의 법률안 증가 추이 및 국민 편의 감안할 때, 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구축 필요

나 의사일정 상정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 정한 후, 안건 상정
- 숙려기간 경과 후 상정,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 경과시 자동 상정 간주(합의시 제외)
 - * 숙려기간 : ① 일부개정법률안 : 15일
②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 20일
③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 5일
④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 경과시 자동 상정 간주(합의시 제외)

다 제안설명

- 원칙 : 발의자, 예외적으로 찬성자도 가능

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일 48시간 전에 의원에게 검토보고서 배부
-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입안과정에 전문위원이 참여하므로 검토보고 안하는 것이 관례

마 대체토론

- 전반적인 문제와 당부 등 일반원칙토론

바 공청회 / 입법청문회

-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나 청문회 실시, 의결로 생략 가능

사 소위원회 회부 및 심사

소위원회 회부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의 여부

- 국회법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의결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 없음.
- 각 상임위 다르게 운영 : 의결로 회부하는 위원회 8개(운영·법사·국방·행안·환경·복지·국토·정보), 의결없이 회부하는 위원회 8개(정무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있는 경우 합의될 때까지 전체회의에 보류하기도 하며, 문방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회부)

(cf)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 2) 의결시 소위원회 심사 대체

※ 소위원회 계류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 가능(국회법 제58조 제4항)

아 촉조심사

- 한 조항 또는 몇 개의 조항을 묶어서 낭독해 가면서 심사하는 방식
-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의 경우 촉조심사 의무, 의결로 생략 가능

자 찬반토론

차 표 결



IV. 기타 국회법의 회의관련 주요 규정

■ 직권상정 관련 규정

-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안건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 2)

- 내용** : 특정 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경과 후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 또는 부의
- 절차** :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 무기명 투표 →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의결로 지정, 또는 ②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 무기명 투표 →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의결로 지정
: 动議 가결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 다만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로 미적용 가능
- 신속처리대상 지정 안건의 심사기간 제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 (1) 소관 위원회 단계에서 지정된 경우
- ◎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 자동 회부, 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완료 → 법사위 심사 미완료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2) 법사위원회(체계자구)단계에서 지정된 경우
- ◎ 지정일부터 9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는 안건 : 위원회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 심사 미완료시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요구대상 안건

-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

요구주체 및 요건

-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요구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후 절차

- 위원장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일반 의결정족수)

의안 상정 숙려기간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 15일
2.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

- (i)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 공문 시행
- (ii) 위원회 개회 불가능한 경우 : 사전에 동의권 위임받아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처리한 경우, 동의권 위임 없이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처리한 경우, 전체위원 서면동의를 받아 처리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등 다양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 동의 방법

- (i)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시 의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구두동의로 대체하며, 예산안 의결후 증액 및 새비목설치 동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그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국회에 통보
※ 장내 소란의 경우는 사전에 서면으로 증액 동의를 받은 후, 의장님 시나리오로 대체
- (ii) 상임위 단계에서 해당 부처장관의 구두동의 여부는 필수적 절차 아님.

■ 위원회에서의 의안 폐기

-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사례 2010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 제291회 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 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부결함. 그러나 동월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임동규 의원 등 66인이 동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동 법률안을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부결됨.

■ 의안의 철회

- 제90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動議를 철회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인사청문특위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도중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임명동의안 철회 요청하였고, 인사청문특위에서 이에 동의함.

■ 수정안 가능 범위

- 제95조(수정동의)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입법 검토제도

- ✓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에 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감사요구제도

- ✓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면질문 제도

- ✓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보고·서류제출 요구제도

-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관련 개별법과의 상충 문제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보고·서류제출요구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면서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간 상충문제 발생

▣ 본회의 규정의 위원회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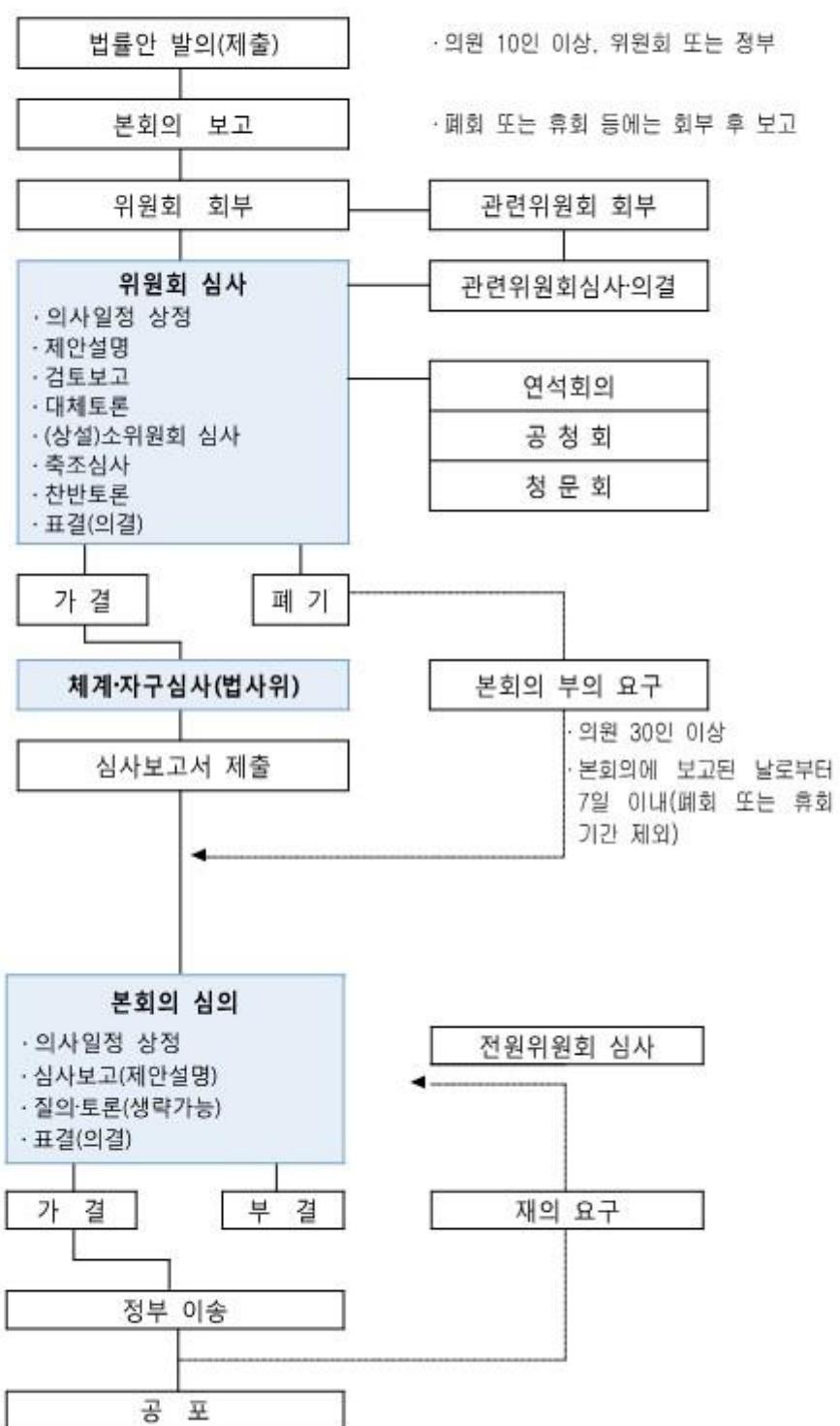
-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動議者와 1人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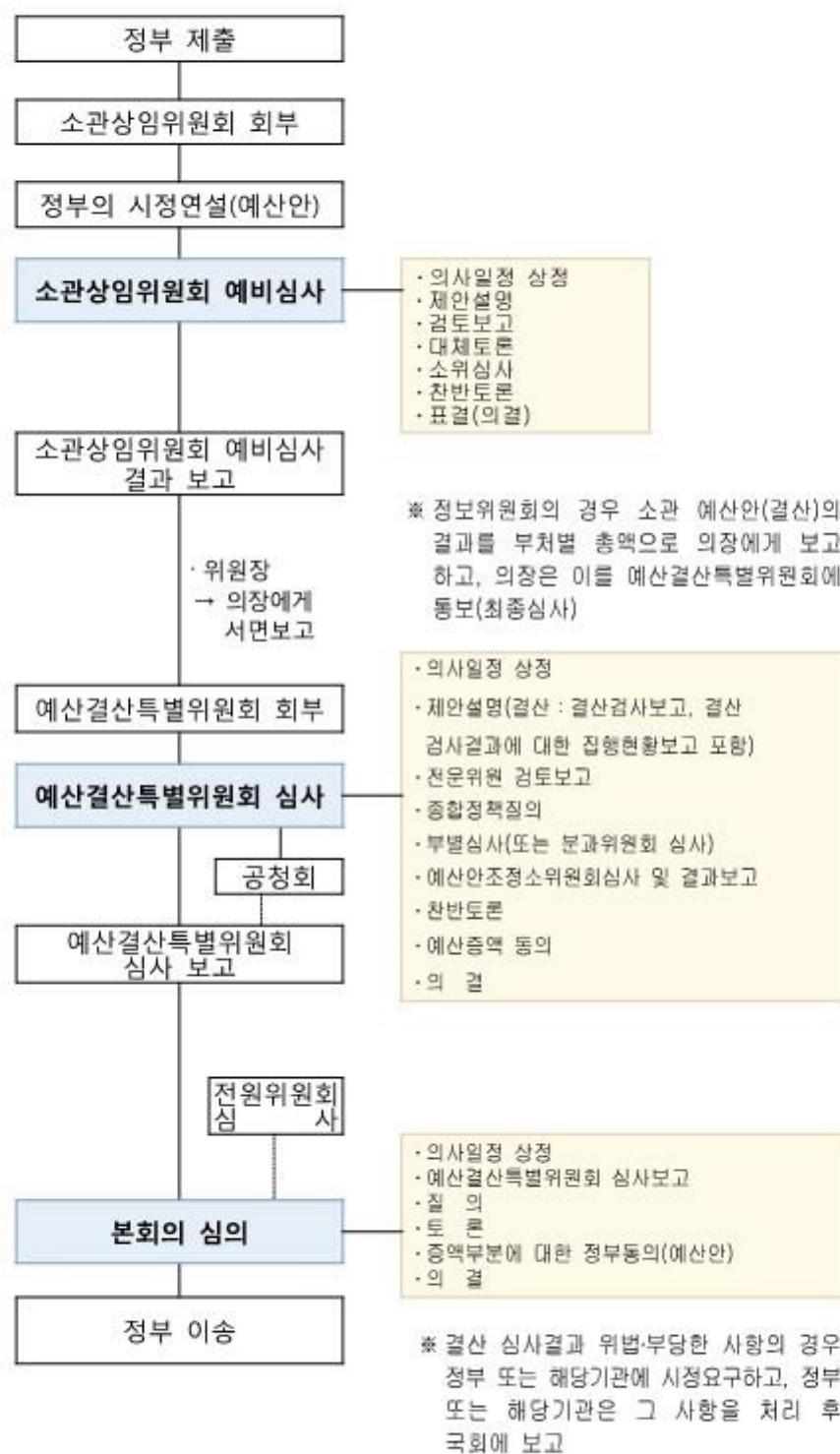
▣ 현행범인인 의원의 체포

-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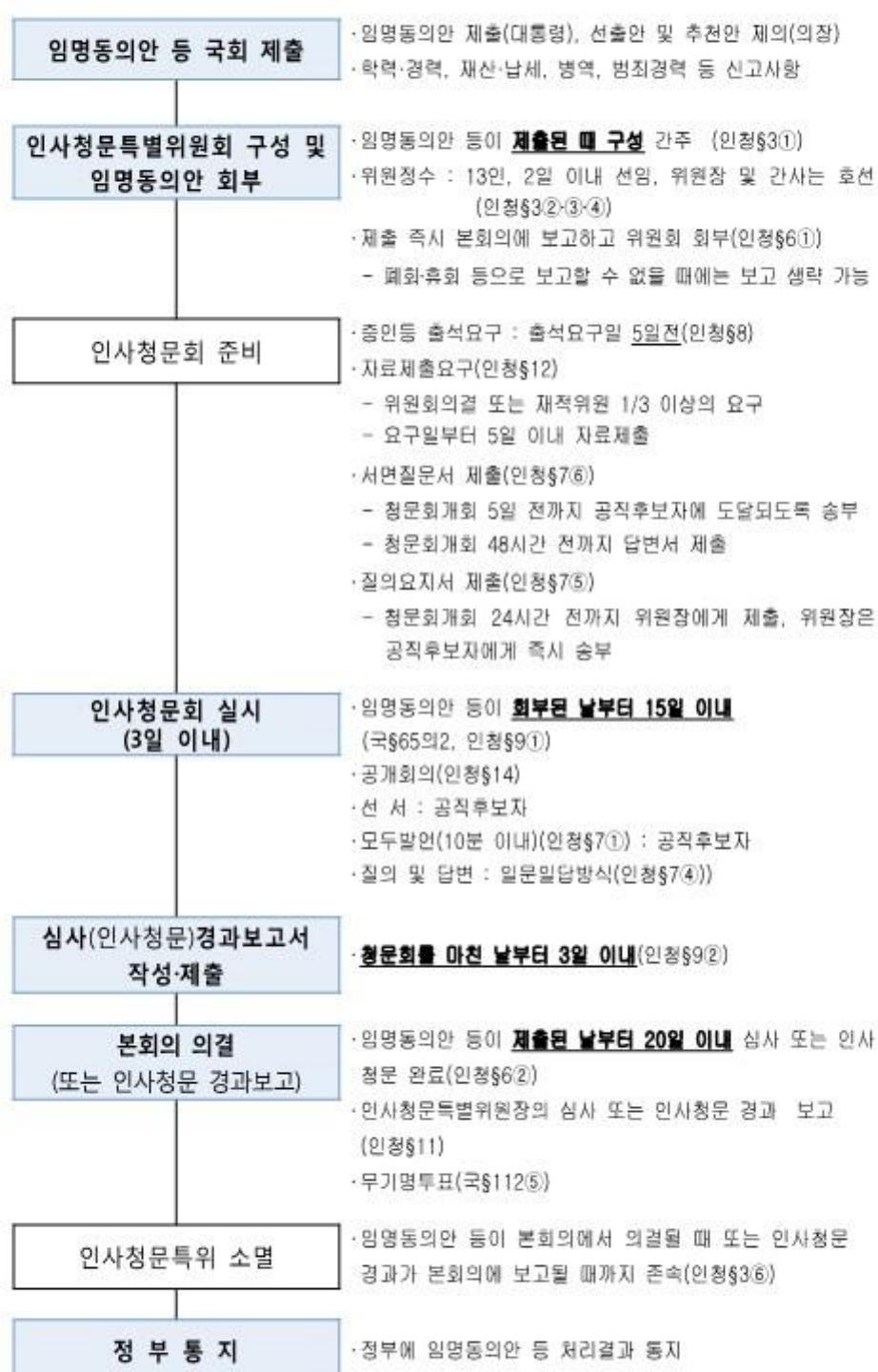
법률안의 처리절차





참고자료 3

임명동의(승인)안의 처리 및 인사청문회 절차



*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요청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구 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대 상 (총60인)	<p>국회동의(17인) : 대법원장, 현재소장, 국무총리, 검사원장, 대법관(13인)</p> <p>국회선출(6인)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3인)</p>	<p>대통령임명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 (16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은총재</p> <p>대법원장지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p>
절차도	<pre> graph TD A[동의안 제출] --> B[인천특위 구성 및 회부] B --> C[인사청문회 (3일 이내)] C --> D[심사경과보고서 제출] D --> E[심사경과보고 및 본회의 의결] E --> F[인천특위 소멸] F --> G[임명동의 통지]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안이 제출된 때 구성 (인정3①) 위원 정수 : 13인(인정3②) 위원 선임 : 2일 이내(인정3③~④) 회부된 날부터 15일이내(인정9①) 청문회를 마친날부터 3일이내 (인정9②)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 (인정11) <u>동의안 무기명 투표</u> (국112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인정3⑥) 대통령에 임명동의 통지 	<pre> graph TD A[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상임위원회 회부] --> B[인사청문회 (3일 이내)] B --> C[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C --> D[인사청문경과 본회의 보고] D --> E[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부된 날부터 15일이내 (인정9①) 청문회를 마친날부터 3일이내 (인정9②)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 보고 (인정11) 본회의의 별도 의결 不要 대통령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인사청문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동의안 심사 완료(인정6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인사청문 완료(인정6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동의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명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② 그 기간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국무위원 등을 임명 또는 지명 가능【인정6③~④】

1. 본회의에서 기도한 예 : 제헌 국회 제1회 제1차(1945. 5. 31.)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지기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천데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봉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講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여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반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려 기도하나이다. 아멘

2. 회의시간 엄수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된 예 : 제2대국회 제8회 제46차(1950. 11. 8.)

○**이종도 의원** 오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인 수에 우리 국회의원출석이 도착한다고 하면 무엇에 가장 필요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봐도 국회의 현상이 올시다. 우리가 부산에서 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온 후 한 번도 얼굴을 내지 않은 분이 많은데 모두 사고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장시간을 도모지 법정인원 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우방 각국에 군대가 와서 귀한 아들 조카 손자를 모두 갖다가 우리 땅에서 피를 흘리는 오늘 이때에 우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법정인 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할려고 할 때 곁에서 부탁까지도 받았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기왕 말을 할 때에는 따금 한 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 가지고 나가자, 말하자면 매일 매일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신문에 이름을 발표하고 또는 선출지역 도지사에게나 군수에게나 통지해서 하도록 무슨 방도를 취하고 그다음에는 신문에다가 매일 어떤 국회의원이 출석을 제일 많이 안 하는가 기재하라고 하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인지도 알 수 없으나 부탁하는 그분 말같이 따끔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법정인 수에 도달하도록 의장과 부의장 세분이 열중한 주선을 하셔서 기어이 출석하도록 하기를 나는 바라고 내려갑니다.

제가 많이 짓거린 까닭으로 동의는 알겠습니다. 다른 어른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역시 우리가 개회하는 시간이 11시 올시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아주 11시로 하고 오후 2시까지 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1. 회의시간 엄수에 관한 긴급동의안

(참조)

회의시간 엄수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안자 김우성 의원 외 47명

주문

국회 본회의는 상호 10시부터 개회한다. 만일 통 시작까지 성원 수에 달치 못한 때에는 당일 회의는 유회하되 통 시작까지 출석치 않은 의원은 각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긴급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3년 11월 8일

○**의장 신익희** 지금 이종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종도 의원이 법정원 수 말씀하시지마는 법정원 수는 3분지 2 출석이면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늘 3분지 2 법정 인원이 출석치 못해서 그대로 자꾸 지연되어 내려간다고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3. 회의록에 대통령 취임사를 수록한 예 : 제헌 제1회 제34차(1948. 7. 24.)

지금은 대통령 취임 축하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주악 서울시립취주악단)
(합창 예술대학합창단)

대통령 취임 축하가

박종화 작사
연재명 작곡

1. 성스럽다 대통령 취임의 날
북쪽으로 백두산 남으로 한라
황해바다 동해를 울릉도까지
대한민국 기세가 호탕하구나
(후렴)
찬란하다 동방에 서기가 인다
끓어 젓든 국토는 이어서지고
삼천만의 겨레는 다시 손잡네
영광의 날 오너라 어서 오너라
2. 거룩하다 우리의 대통령이여
민주주의 성화를 높적이 들고
대한민국 현장을 드리운 뒤에
엄숙히 이 나라의 공복이 되다
3. 눈물겹다 오늘날 조국왕복은
40여 년 싸워 온 민족정기라
대한민국 국권을 누가 막으리
자자손손 억만년 기리 누리세

4. 표결시 본회의장 문을 폐쇄한 예 : 제헌국회 제2회 제2차(1949. 5. 24.)

2.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중간 생략).....

○의장 신익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투표용지를 노나 드리면서 투표를 실행하는 기간은 문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중간 생략).....

○의사과장 최윤전 경위 직원은 앞쪽 문을 폐쇄해 주십시오.

(12시50분 양방 출입문 폐쇄)

그러면 제1렬로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0시50분 호명으로 투표개시)

(하오1시5분 투표완료)

○의장 신익희 시방 투표가 다 끝이 났는데 투표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방 투표함을 봉쇄합니다.

.....(중간 생략).....

투표용지 논아 준 수효가 184장, 가에 투표 수효가 88표, 부에 투표 수효가 95표, 기권이 한 표, 이 투표한 결과는 본안 즉 석방을 요구한다는 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5. 의원 퇴장시킨 예 :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 제48차(1960. 11. 23.)

- 국무총리 출석 요구에 관한 건 -

.....(중간 생략).....

○△△△의원 지금 장총리를 출석을 시켜 가지고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들은 책임을 묻자는 발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 발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간 생략).....

○△△△의원(의석에서) 집어치워! 집어치워!

○의장(곽상훈)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원(계속) 따져 보았던들 결과로는 일반입니다.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해요.

○△△△의원(의석에서) 이 개새끼야!

○△△△의원 개새끼가 누가 개새끼야!

(장내소연)

○의장(곽상훈) 발언 중지해요. 퇴장해요. 퇴장해요. 발언 중지해요!

퇴장해요..... 퇴장하시오..... 퇴장하시요.....

(장내소연)

오늘 한두 번도 아니고 적어도 발언이 있으면 정당하게 청구해서 할 것이고 적어도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개자식이니 소자식이니 이런 금수폐설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의사의 책임상 여기에 두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퇴장하시오 퇴장하시오.

.....(중간 생략).....

○의장(곽상훈) 퇴장하기 전에는 사회 않겠읍니다.

.....(중간 생략).....

여러분이 의장의 불신임을 내더라도 나는 이끌로는 사회 못 하겠읍니다.

.....(중간 생략).....

(상오 11시 29분 회의 중지)

(상오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곽상훈)(중간 생략).....

오늘은 비록 한번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너무 신랄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잠깐이나마 퇴장을 했는데 다시 속개하고 정남규 의원 발언을 계속하려면 다시 하세요.

※ 회의록 분실 및 미작성 사례

대	회	차	회 의 일	비 고
2대	7	3	1950. 6. 26	인쇄 도중 분실
	1~10	대구(임시수도)	파년 국회(1차~37차분) 회의록 작성 중단(이승만 대통령의 서울사수 방송 담화 및 국회도 서울사수 결의, 속기사 파년 대열 참석 못함)	
	8	11~31 부산		
	32~37	서울		

제25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회의록 사례 연구

홍순관 대한속기협회 지도위원

회의록 사례 연구





목 차

의회 용어와 회의록 표기

01

회의록 사례 검토

02

특이 사례 발표

03

1. 회의록 표기 근거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의
근거는 법규



2. 회의록 표기



회의록 표기 결정

3. 요지록과 의사록 구분



4. 의사록 샘플

제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1.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3.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주주총회 사장자인 이성번은 본 주주총회의 출석주주수 및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7기 정기주주총회가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한 후, 의사를 진행합니다.**

출석발행주식수 : 14,427,431주)		
구 分	의결권 있는 주주수 (명)	의결권 있는 주식수 (주)
총 수 :	24, 787()	12,737,118()
한 목 수 :	285()	9,505,005()
(유임포함)		74,550()
총 수 :	24, 787()	5,402,467()
한 목 수 :	285()	4,170,258()
(유임포함)		77,234()
총 수 :	23, 198()	14,063,425()
한 목 수 :	287()	9,716,788()
(유임포함)		69,115()
		539()
		5()
		1()

4. 의정안사
주주총회에 의장 **는** 2013년 경영실적과 2014년 경영방침 등 의정안 사항을 하니,

5. 감사보고 및 외부감사원 선임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은** 제7기 결산서류가 명령 및 결증에 **의거** 회사의 재산 및 순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를 합니다.
이미 주주 정관은 영업보고를 경영실무자로 대체하거나, 재산을 이고 합작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영업보고를 마친다.
이어 의장 **는** 상법제67조를 기반으로 기관으로 활동하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다.

6.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제7기 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 송인의 건
의장 **는** 제1호 의안인 제7기 재무제표 송인의 건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주주 투표는 원안대로 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해독운서원, 제1항 및 제2항을 통하여 면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주는 157,699주이며, 나머지 출석주주 전원의 투표로 승인 기결입니다.

● 제2호 의안 : 이사회 산행의 건

의장 **는** 제2호 의안인 이사회 산행의 건을 승인합니다. 박원해 사장이사 및 김철희 사장이사의 의거기 2014년 3월을 마감하며 이라 이사회와 총전 한 김철희 사장이사를 제31일까지 출장을 것을 요청하고, 박원해 사장이사를 대신하여 사장이사후보주총임원회가 충당한 박원해를 선임하여 출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주식 100% 투표는 원안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해독운서원 및 유임장은 통하여 이사회를 표시한 주식주는 제2-1호 978,167주, 제2-2호 1,162,081주였으며, 나머지 출석주주 전원의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는** 제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승인하고, 김현 법무법인 미래 시장이사를 선임한 박원해 위원으로 선임하여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주식 100% 투표는 원안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한국해독운서원 및 유임장은 통하여 박원해 실무주주는 460,197주였으며, 나머지 출석주주 전원의 투표로 충의로 승인 기결합니다.

● 제4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송인의 건

의장 **는** 제4호 의안인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승인 했습니다. 출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주식 100% 투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한국해독운서원, 박원해 실무주 투표는 원안대로 승인 했습니다. 출석주주 전원의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 제5호 의안 : 감찰 계획서 송인의 건

의장 **는** 제5호 의안인 감찰 계획서 송인의 건을 승인한 후, 제2사장 부문·본격운영의 형편으로 문리하여 감찰회사를 승인하는 허지를 제시하고 이를 승인하여 출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주식 100% 투표는 원안대로 출장을 요청합니다. 한국해독운서원, 박원해 실무주 투표는 원안대로 출장을 요청하는 허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주식 100% 투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출석주주 전원의 투표로 승인 기결합니다.

5. 속기록과 회의록 구분

속기록

속기문자를
한글로 번역

회의록

속기록에 회의 참고
자료 첨부

6. 속기록

(제374~380회)

제374~380회 民議院速記錄		제374~380회 民議院速記錄	
제374회(374~375회)	제375회(375~376회)	제376회(376~377회)	제377회(377~378회)
제378회(378~379회)	제379회(379~380회)	제380회(380~381회)	제381회(381~382회)
제382회(382~383회)	제383회(383~384회)	제384회(384~385회)	제385회(385~386회)
제386회(386~387회)	제387회(387~388회)	제388회(388~389회)	제389회(389~390회)
제390회(390~391회)	제391회(391~392회)	제392회(392~393회)	제393회(393~394회)
제394회(394~395회)	제395회(395~396회)	제396회(396~397회)	제397회(397~398회)
제398회(398~399회)	제399회(399~400회)	제400회(400~401회)	제401회(401~402회)
제402회(402~403회)	제403회(403~404회)	제404회(404~405회)	제405회(405~406회)
제406회(406~407회)	제407회(407~408회)	제408회(408~409회)	제409회(409~410회)
제410회(410~411회)	제411회(411~412회)	제412회(412~413회)	제413회(413~414회)
제414회(414~415회)	제415회(415~416회)	제416회(416~417회)	제417회(417~418회)
제418회(418~419회)	제419회(419~420회)	제420회(420~421회)	제421회(421~422회)
제422회(422~423회)	제423회(423~424회)	제424회(424~425회)	제425회(425~426회)
제426회(426~427회)	제427회(427~428회)	제428회(428~429회)	제429회(429~430회)
제430회(430~431회)	제431회(431~432회)	제432회(432~433회)	제433회(433~434회)
제434회(434~435회)	제435회(435~436회)	제436회(436~437회)	제437회(437~438회)
제438회(438~439회)	제439회(439~440회)	제440회(440~441회)	제441회(441~442회)
제442회(442~443회)	제443회(443~444회)	제444회(444~445회)	제445회(445~446회)
제446회(446~447회)	제447회(447~448회)	제448회(448~449회)	제449회(449~450회)
제450회(450~451회)	제451회(451~452회)	제452회(452~453회)	제453회(453~454회)
제454회(454~455회)	제455회(455~456회)	제456회(456~457회)	제457회(457~458회)
제458회(458~459회)	제459회(459~460회)	제460회(460~461회)	제461회(461~462회)
제462회(462~463회)	제463회(463~464회)	제464회(464~465회)	제465회(465~466회)
제466회(466~467회)	제467회(467~468회)	제468회(468~469회)	제469회(469~470회)
제470회(470~471회)	제471회(471~472회)	제472회(472~473회)	제473회(473~474회)
제474회(474~475회)	제475회(475~476회)	제476회(476~477회)	제477회(477~478회)
제478회(478~479회)	제479회(479~480회)	제480회(480~481회)	제481회(481~482회)
제482회(482~483회)	제483회(483~484회)	제484회(484~485회)	제485회(485~486회)
제486회(486~487회)	제487회(487~488회)	제488회(488~489회)	제489회(489~490회)
제490회(490~491회)	제491회(491~492회)	제492회(492~493회)	제493회(493~494회)
제494회(494~495회)	제495회(495~496회)	제496회(496~497회)	제497회(497~498회)
제498회(498~499회)	제499회(499~500회)	제500회(500~501회)	제501회(501~502회)
제502회(502~503회)	제503회(503~504회)	제504회(504~505회)	제505회(505~506회)
제506회(506~507회)	제507회(507~508회)	제508회(508~509회)	제509회(509~510회)
제510회(510~511회)	제511회(511~512회)	제512회(512~513회)	제513회(513~514회)
제514회(514~515회)	제515회(515~516회)	제516회(516~517회)	제517회(517~518회)
제518회(518~519회)	제519회(519~520회)	제520회(520~521회)	제521회(521~522회)
제522회(522~523회)	제523회(523~524회)	제524회(524~525회)	제525회(525~526회)
제526회(526~527회)	제527회(527~528회)	제528회(528~529회)	제529회(529~530회)
제530회(530~531회)	제531회(531~532회)	제532회(532~533회)	제533회(533~534회)
제534회(534~535회)	제535회(535~536회)	제536회(536~537회)	제537회(537~538회)
제538회(538~539회)	제539회(539~540회)	제540회(540~541회)	제541회(541~542회)
제542회(542~543회)	제543회(543~544회)	제544회(544~545회)	제545회(545~546회)
제546회(546~547회)	제547회(547~548회)	제548회(548~549회)	제549회(549~550회)
제550회(550~551회)	제551회(551~552회)	제552회(552~553회)	제553회(553~554회)
제554회(554~555회)	제555회(555~556회)	제556회(556~557회)	제557회(557~558회)
제558회(558~559회)	제559회(559~560회)	제560회(560~561회)	제561회(561~562회)
제562회(562~563회)	제563회(563~564회)	제564회(564~565회)	제565회(565~566회)
제566회(566~567회)	제567회(567~568회)	제568회(568~569회)	제569회(569~570회)
제570회(570~571회)	제571회(571~572회)	제572회(572~573회)	제573회(573~574회)
제574회(574~575회)	제575회(575~576회)	제576회(576~577회)	제577회(577~578회)
제578회(578~579회)	제579회(579~580회)	제580회(580~581회)	제581회(581~582회)
제582회(582~583회)	제583회(583~584회)	제584회(584~585회)	제585회(585~586회)
제586회(586~587회)	제587회(587~588회)	제588회(588~589회)	제589회(589~590회)
제590회(590~591회)	제591회(591~592회)	제592회(592~593회)	제593회(593~594회)
제594회(594~595회)	제595회(595~596회)	제596회(596~597회)	제597회(597~598회)
제598회(598~599회)	제599회(599~600회)	제600회(600~601회)	제601회(601~602회)
제602회(602~603회)	제603회(603~604회)	제604회(604~605회)	제605회(605~606회)
제606회(606~607회)	제607회(607~608회)	제608회(608~609회)	제609회(609~610회)
제610회(610~611회)	제611회(611~612회)	제612회(612~613회)	제613회(613~614회)
제614회(614~615회)	제615회(615~616회)	제616회(616~617회)	제617회(617~618회)
제618회(618~619회)	제619회(619~620회)	제620회(620~621회)	제621회(621~622회)
제622회(622~623회)	제623회(623~624회)	제624회(624~625회)	제625회(625~626회)
제626회(626~627회)	제627회(627~628회)	제628회(628~629회)	제629회(629~630회)
제630회(630~631회)	제631회(631~632회)	제632회(632~633회)	제633회(633~634회)
제634회(634~635회)	제635회(635~636회)	제636회(636~637회)	제637회(637~638회)
제638회(638~639회)	제639회(639~640회)	제640회(640~641회)	제641회(641~642회)
제642회(642~643회)	제643회(643~644회)	제644회(644~645회)	제645회(645~646회)
제646회(646~647회)	제647회(647~648회)	제648회(648~649회)	제649회(649~650회)
제650회(650~651회)	제651회(651~652회)	제652회(652~653회)	제653회(653~654회)
제654회(654~655회)	제655회(655~656회)	제656회(656~657회)	제657회(657~658회)
제658회(658~659회)	제659회(659~660회)	제660회(660~661회)	제661회(661~662회)
제662회(662~663회)	제663회(663~664회)	제664회(664~665회)	제665회(665~666회)
제666회(666~667회)	제667회(667~668회)	제668회(668~669회)	제669회(669~670회)
제670회(670~671회)	제671회(671~672회)	제672회(672~673회)	제673회(673~674회)
제674회(674~675회)	제675회(675~676회)	제676회(676~677회)	제677회(677~678회)
제678회(678~679회)	제679회(679~680회)	제680회(680~681회)	제681회(681~682회)
제682회(682~683회)	제683회(683~684회)	제684회(684~685회)	제685회(685~686회)
제686회(686~687회)	제687회(687~688회)	제688회(688~689회)	제689회(689~690회)
제690회(690~691회)	제691회(691~692회)	제692회(692~693회)	제693회(693~694회)
제694회(694~695회)	제695회(695~696회)	제696회(696~697회)	제697회(697~698회)
제698회(698~699회)	제699회(699~700회)	제700회(700~701회)	제701회(701~702회)
제702회(702~703회)	제703회(703~704회)	제704회(704~705회)	제705회(705~706회)
제706회(706~707회)	제707회(707~708회)	제708회(708~709회)	제709회(709~710회)
제710회(710~711회)	제711회(711~712회)	제712회(712~713회)	제713회(713~714회)
제714회(714~715회)	제715회(715~716회)	제716회(716~717회)	제717회(717~718회)
제718회(718~719회)	제719회(719~720회)	제720회(720~721회)	제721회(721~722회)
제722회(722~723회)	제723회(723~724회)	제724회(724~725회)	제725회(725~726회)
제726회(726~727회)	제727회(727~728회)	제728회(728~729회)	제729회(729~730회)
제730회(730~731회)	제731회(731~732회)	제732회(732~733회)	제733회(733~734회)
제734회(734~735회)	제735회(735~736회)	제736회(736~737회)	제737회(737~738회)
제738회(738~739회)	제739회(739~740회)	제740회(740~741회)	제741회(741~742회)
제742회(742~743회)	제743회(743~744회)	제744회(744~745회)	제745회(745~746회)
제746회(746~747회)	제747회(747~748회)	제748회(748~749회)	제749회(749~750회)
제750회(750~751회)	제751회(751~752회)	제752회(752~753회)	제753회(753~754회)
제754회(754~755회)	제755회(755~756회)	제756회(756~757회)	제757회(757~758회)
제758회(758~759회)	제759회(759~760회)	제760회(760~761회)	제761회(761~762회)
제762회(762~763회)	제763회(763~764회)	제764회(764~765회)	제765회(765~766회)
제766회(766~767회)	제767회(767~768회)	제768회(768~769회)	제769회(769~770회)
제770회(770~771회)	제771회(771~772회)	제772회(772~773회)	제773회(773~774회)
제774회(774~775회)	제775회(775~776회)	제776회(776~777회)	제777회(777~778회)
제778회(778~779회)	제779회(779~780회)	제780회(780~781회)	제781회(781~782회)
제782회(782~783회)	제783회(783~784회)	제784회(784~785회)	제785회(785~786회)
제786회(786~787회)	제787회(787~788회)	제788회(788~789회)	제789회(789~790회)
제790회(790~791회)	제791회(791~792회)	제792회(792~793회)	제793회(793~794회)
제794회(794~795회)	제795회(795~796회)	제796회(796~797회)	제797회(797~798회)
제798회(798~799회)	제799회(799~800회)	제800회(800~801회)	제801회(801~802회)
제802회(802~803회)	제803회(803~804회)	제804회(804~805회)	제805회(805~806회)
제806회(806~807회)	제807회(807~808회)	제808회(808~809회)	제809회(809~810회)
제810회(810~811회)	제811회(811~812회)	제812회(812~813회)	제813회(813~814회)
제814회(814~815회)	제815회(815~816회)	제816회(816~817회)	제817회(817~818회)
제818회(818~819회)	제819회(819~820회)	제820회(820~821회)	제821회(821~822회)
제822회(822~823회)	제823회(823~824회)	제824회(824~825회)	제825회(825~826회)
제826회(826~827회)	제827회(827~828회)	제828회(828~829회)	제829회(829~830회)
제830회(830~831회)	제831회(831~832회)	제832회(832~833회)	제833회(833~834회)
제834회(834~835회)	제835회(835~836회)	제836회(836~837회)	제837회(837~838회)
제838회(838~839회)	제839회(839~840회)	제840회(840~841회)	제841회(841~842회)
제842회(842~843회)	제843회(843~844회)	제844회(844~845회)	제845회(845~846회)
제846회(846~847회)	제847회(847~848회)	제848회(848~849회)	제849회(849~850회)
제850회(850~851회)	제851회(851~852회)	제852회(852~853회)	제853회(853~854회)
제854회(854~855회)	제855회(855~856회)	제856회(856~857회)	제857회(857~858회)
제858회(858~859회)	제859회(859~860회)	제860회(860~861회)	제861회(861~862회)
제862회(862~863회)	제863회(863~864회)	제864회(864~865회)	제865회(865~866회)
제866회(866~867회)	제867회(867~868회)	제868회(868~869회)	제869회(869~870회)
제870회(870~871회)	제871회(871~872회)	제872회(872~873회)	제873회(873~874회)
제874회(874~875회)	제875회(875~876회)	제876회(876~877회)	제877회(877~878회)
제878회(878~879회)	제879회(879~880회)	제880회(880~881회)	제881회(881~882회)
제882회(882~883회)	제883회(883~884회)	제884회(884~885회)	제885회(885~886회)
제886회(886~887회)	제887회(887~888회)	제888회(888~889회)	제889회(889~890회)
제890회(890~891회)	제891회(891~892회)	제892회(892~893회)	제893회(893~894회)
제894회(894~895회)	제895회(895~896회)	제896회(896~897회)	제897회(897~898회)
제898회(898~899회)	제899회(899~900회)	제900회(900~901회)	제901회(901~902회)
제902회(902~903회)	제903회(903~904회)	제904회(904~905회)	제905회(905~906회)
제906회(906~907회)	제907회(907~908회)	제908회(908~909회)	제909회(909~910회)
제910회(910			

8. 의안 안건 의제 구분



9. 의장직무대행

경기도 회의규칙

제14조(임시의장)

-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를 말한 제13조제1항의 사고 중 권위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10. 으[장선거 시] 을[장직무대행 표기]



040 M 이종수·이현우·이현우

C 의회사무처장 이전호 의회사무처장 이전호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간송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소집된 이번 임시회 접회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충선인 수와 의원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6명의 지역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님이 당선되면서 128명의 의원 모두가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9
—
4

116

(10421号 76回)

100 - 110

(104)

한국전통문화재단은 전통문화재 보호와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문적인 연구·조사·보존·활용·전시·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 의장대리?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원 인건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주광님 김민중 의원)(계속)

○의장대리 김동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주광님 김용찬 의원)(계속)

○의장대리 김동한 의사당정 청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였습니다.(10여 04분)
교육행정 질문 순서는 주광님 의원, 김민중 의원 순으로 하되, 질문 방법은 시연에 손의한 대로 먼저, 주경남 의원과 김민중 의원의 질문과 답변과 같은 질문과 답변은 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순서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 의원(나오녀)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님 의원 존경하는 2018년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축하고 교육감님, 부동산 주거환경 의원입니다.

서구 금호 1·2동, 서구동 출신 주경남 의원입니다. 또한 저러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없이 기회를 갖도록 삶의 길을 먼저 지나온 선배로서 어른들의 책무이자 출발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인내해야 할 기본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교육의 문제점의 원인과 그에 따른 교육행정 책임당국인 광주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향후 개선방안과 같은 문제를 찾고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법률을健全한 시민 광주시 교육에 대해 무한공동체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주역들에게 공과 책임을 줄 수 있는 공론의장을 기대하면서 교육청 소관 사항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2. 위원장직무대행 표기

제22회 한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한남시의회사무과

□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황숙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의 위원장을 차남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 흥미라 위원 이현상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황숙희 방금 충격적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건이 있습니다. 다 후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후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현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현상 위원님 오내미 회의를 주재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숙희 위원장 직무대행 이현상 위원장과 사퇴하고

○ 위원장 이현상 충격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차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전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현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원장 직무대행

국회법

제50조(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0. 6. 29>

14. 위원장직무대행 표기

第283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議事日程

審議日程

○위원장직무대행 조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민족 의사전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위원회 회의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 9인이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 요구를 하였

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들은 소관 법률 70건과 노총부 소관 법
률 77건 등 총 147건의 법률안이 미상정되어 아
직 심사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4부터 제701까지 이 7건과 위
시 일정 제157부터 제147까지 11건의 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0조의 상정시

마다 시 이 총 18건의 법률안이 미국 상정시키기
요건에 모자라지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
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7~147를 안부터 의사일정
의 한 약취병 치법 일부 개정법안부터 의원이 대표발
언 147장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기
간근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이상 총 147건의 법률안을

다.
대체로은 후 법률사소원에 회부함이 마땅하
나 우리 위원회는 아직 법안심사소 대기 구설대처
방식은 관찰수 소관 법률 70건과 노총부 소관 법
률 77건 등 총 147건의 법률안이 미상정되어 아
직 심사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7부터 제147까지 11건의 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0조의 상정시

마다 시 이 총 18건의 법률안이 미국 상정시키기
요건에 모자라지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
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7~147를 안부터 의사일정
의 한 약취병 치법 일부 개정법안부터 의원이 대표발
언 147장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기
간근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이상 총 147건의 법률안을

다.
대체로은 후 법률사소원에 회부함이 마땅하
나 우리 위원회는 아직 법안심사소 대기 구설대처
방식은 관찰수 소관 법률 70건과 노총부 소관 법
률 77건 등 총 147건의 법률안이 미상정되어 아
직 심사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석 위원(6인)

강 성 천 박 대 배 박 준 선 이 두 아
이 학 수 조 원 훈

○위원장 아닌 총석 위원(2인)

김 성 희 김 윤 전

○총석 전문위원

15. 위원장직무대리와 위원장대리 구분

국회법

제50조(간사)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6. 위원장직무대리

제33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6년 7월 25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제6호)

심사원 인건

- 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강석훈·김상훈·류성진·김종태·김철우·김태수·김동열·이상일·김용태·이진복·김철우·이태인·이경우·정수성·정우한·김정운·박태웅·신동환·전하진·정은희·홍지완·선희진·전상봉·의원 발의)(제6호)

○ 위원장직무대리 총괄표

- 최석우 청도래 주시기
마땅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총괄표

- 호승 척화가 처리할
기업 관리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탁회의에서 '상정관
이후에 오늘까지 5회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정은 사실특별법으로서 상법·도·공정거래법·세법을 넘어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정
부는 신중하게 척화가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척화가 여러 차례로 어려워서 사
업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
면서도 이 법안이 경제적 짐중이나 계명의 3대
성숙 또 일감을 압수하기 어렵게 우려가 많다는 것이 차라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과정에서 차임금 기준이라는
제 또 경제적 길중이나 혁법의 3대 성숙, 경영권
승계의 문제 그다음에 일감 돌아주기 같은 것에
작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법상의 원칙에 국회가

○ 김종훈 위원

- (177-0226 개최)
○ 위원장직무대리 총괄표

- 최석우 청도래 주시기
마땅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총괄표

- 호승 척화가 처리할
기업 관리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탁회의에서 '상정관
이후에 오늘까지 5회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정은 사실특별법으로서 상법·도·공정거래
법·세법을 넘어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척화가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척화가 여러 차례로 어려워서 사
업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
면서도 이 법안이 경제적 짐중이나 계명의 3대
성숙 또 일감을 압수하기 어렵게 우려가 많다는
것이 차라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과정에서 차임금 기준이라는
제 또 경제적 길중이나 혁법의 3대 성숙, 경영권
승계의 문제 그다음에 일감 돌아주기 같은 것에
작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법상의 원칙에 국회가

17. 위원장대리

6 제342회-국방부 제1차(2016년5월3일)

○ 위원장대리 김성한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기호 위원 그동안 군을 위해서 강관님 이하 직원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한 주소가 어디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설계도 국방의 예산부대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 인간적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중대장님, 우리 아들 삼집 그만 서기세요. 우리 아들 사전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점심·저녁 예 는 뭔가요. 아들이 다리가 아픈데 경제 균무 시켜 줄어요. 복지증 마태 주세요'.

들은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 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간접이라는 상황 까지로 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백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부대 관리 민간용역 경쟁을 추진하고 밤의 생활 개선하는 과정에서 웬드폰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천국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느냐 하고 물고 싶습니다.

발생한 무리자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나, 또 보이스카우트, 대학생 MT, 가서 악영 하는 것 아니나, 이런 비난을 지금 알고 있습니 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대로 계속 간다면 지금 보다 더 그런 비난은 신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는 어떻게 체수를 줄 것이 나하고 정관님한테 물고 싶습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기호 위원님께서 아전부 대의 아전성, 군대비용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가 적도 잘 알고 있습 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군의 일반적인 현상이나, 아주 저극적 부분적인 현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군이 군대답게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한기호 위원 또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해군기지는 1963년도에 활동문화학에서 결정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정한 무지를 선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말 끝으로 해군기지가 재활용되는 데 여기에 14개월이 걸렸으나 추가비용이 275억이 들어가고 또 34억의 구상편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도 합법이라 고 판결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군용 드론을 타고 방호 출연 중인 우리 해병대원들에게 경찰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가능 아픈 게, 그 트럭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고개를 죽 속이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는 군인들에 대한 용의를 떨었습니다. '포로 분위기'를 조성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미하는 것이나', '죽임은 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살에 그냥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국방이 어떻게 할 거나, 지금 구상편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주도자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더욱 단호한 태도를 갖추고 필요하면 병사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확고한 태도를 갖추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날 언론에 노출된 상태로만 화시는 이것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차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 그 보도를 보고 종전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제가 봤는데, 그

17-1. 의장직무대리

제335회 - 제1차(2015년7월9일) 1

卷之三

제335회 국회
(임시회)

卷之三

2015년 7월 9일(목) 오전 2시

의사일정

120

1. 2015년도 제1회 추계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부의 서정연설 1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설운) 사업회견 2
 3. 산업통상자원위원회(김동철) 사업의견 2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동철) 보고접수 3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합선처 3
 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통정책 및 규제율화방안 3
 7. 산업통상자원위원회(설운) 사업설명회(3.6.설운인) 연사 3

○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14414분 개의) 의식을 경매해 주시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글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자 문화류 개화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대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대설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4시) 16분

18. 개회와 개의 구분

개회

제7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7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79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개의

제18조(개의)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국회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19. 유회

조문 비교

제18조(개의)

-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라 개의사 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제18조(개의)

- ② 의장은 제17조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

제14조(회의에 관한 신포)

-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신 있다. <개정 2007.7.19.>
- ③ 회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중 제2항의 산회를 신포한다. <서울시의회>

20. 유호 표기

(2)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시(2018년 7월 1일)(목)

장소(재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2018년도 재정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체계안

심사문건

(비)본 개회

○ 위원장 사령관 성이 되었으므로 제2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정된 주제인 그동안에 있었던 회의를 소집해서 어제 처리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안을 처리하였고 회의나 오는 벌써 2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셨던 관계로 오늘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모두 다 참석하실 때까지,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자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의정)

21. 원호 玄호

卷之三

（2022）第1期

기독교의 유통 체계가 있음을 알다니 하이클리어 가을 토박치기는 거칠 험에 흐제식이다.

○ 원장 평대문 아내, 일단은 제가 하는 걸로....., 짐전면요

0 경동군 위위 허나경면 2012년

O 헤겔의 철학 10

○ 김기현(金基鉉)은 1970년 1월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으로, 2000년 10월 10일 청와대 청탁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활동한 청년 운동가이다.

二十一

100-101

卷之三

中華書局影印

二
卷之三

22. 유호 표기

54 제284회 -률도부당제19차

○원기환 위원 아니, 강성태 위원님한테 그렇게
아닌을 끌고도 그렇게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 하
세요, 위원장님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대체로를 다 하셨고, 의
사진행방안 대부분은 다 하셨고……
(대체도くん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또 세종시 얘기까지 하셨고……
또는 충돌하고 의견화시키기를 다시 한번 제창합
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식 자……

○김진애 위원 대체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체로를 안 했어요.

○최규성 위원 대체로든 더 추가한다고 했어.
수가,

○김영환 위원 조금이라 하시라고 했잖아, 위
원장님이,

○위원장 이병식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는……

○박기준 위원 야당 위원들이……

○최규성 위원 추가 토론을……

○위원장 이병식 다른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
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13시38분 위원장 펴장)

수석전문위 원
전문위 원
전문위 원
○정부총합석지
국토해양부

국장 2 차 관
제작조 정설강
수진본부 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개점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년 2009. 11. 13. 정부 제출)

이상 5년 11월 16일 회부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년 2009. 11. 16. 정부 제출)

이상 3년 11월 17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전북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이전북·박민식·조원진·안홍준·
유재중·이명규·이사철·김무성·배영식·

○출석 위원(27인)

-1 - 21 81 41 31 32 71 44 86

23. 의사일정 변경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한다. <개정 1998.11.5., 2007.5.3.>

24. 윤사일정변경표

112

卷之三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학은 그 자체로는 예술이나 예술과 같은 예술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출판과 인쇄

四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경제학을 통해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דרכן ירושלים

卷之三

五

卷之三

四

다음은 의사당 행정부 2015년도 자체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중 의회부처 소관의 예산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은 행정부처 소관으로 위원회별로 세입 세출 예산을 정한 것입니다.

卷之六

1000 87

26. 의사일정변경표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외안의 비율증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2.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작의 전(2권)
53.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54.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식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55.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56. 공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교정공체회법안
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형외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균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식중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원 안건

- 0 국무위원장(법무·김현우) 인사 5
1. 국회운영위원회(유승민) 사임의 건 5
2. 구조조정위원회(최기현·최기현·이인영·이인영) 회기 연장의 건 5
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도교통위원회 제출) 5
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도교통위원회 제출) 5
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박홍근·김윤덕·체육처·유기홍·박남준·김광진·이완영·이미경 의원 발의) 15
- 0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
50. 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체혁실편집위원회 제출) 16
56. 공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체혁실편집위원회 제출) 16
51. 외안의 비율증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윤영희원장 제출) 17
52.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작의 전(2권)(교육문화체육관광부·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부 원장 제출) 17
53.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

27. 의안의 대표발의

서울시 |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8. 대표 발의 표기

삼사도 안건

1. 청주시 교통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 발의) 안성현, 최진현, 최충진, 박상동,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홍수,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 발의) 박현순, 윤연상, 박정희, 남연수, 박정희, 남연수,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우근 의원 대표 발의) 이우근, 김태수, 김명호, 유재근, 박정희, 유재근, 박금순, 이유자, 박상돈,

4. 청주시 공기질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주국제학교 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영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역 조례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종합구역 주택지개발비 사업 정비(여정구역 해체)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청주시 교통공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진현, 박성돈,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홍수,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완복, 안종수, 박정희, 남연심, 황영호, 김태수, 최진현, 문인자,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이전기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근 의원 대표발의)(이우근, 안성현, 안홍수, 전규식, 안성현, 박정희, 유미고, 황영호, 마근순, 김현경 의원 발의)

- #### 4.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주국제에코플랜트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대표발의 표기



제2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의록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학교 전용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원단체 및 고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업무보고의 건
가. 가정 육포지구 1종 신설 추진안
나. 사업 특성화종 출립 추진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태 윤석준 배향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학교 전용 조례안(조홍렬 박상태 이경아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원단체 및 고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업무보고의 건
가. 가정 육포지구 1종 신설 추진안
나. 사업 특성화종 출립 추진안

○위원장 윤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태 의원님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학교 전용 조례안이 지난 4월 11일 의정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정 육포지구 1종 신설 추진안 등 2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태 윤석준 배향규의원 발의)

○위원장 윤석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태 의원님 불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30.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0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0 의회규칙 제22호)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0 의회규칙 제24호]

31. 조례안 0|오|의 발의자 표7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2차 본회의

(1) 유통망 구조화
① 유통망 구조화 대상
② 유통망 구조화 목표
③ 유통망 구조화 전략
④ 유통망 구조화 평가

卷之三

32. 조례안이 오의 발의자 표기 |

3. 차량(기계) 운전자의 운전 행위

卷四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민일보 선거기획단

四庫全書

9

서울특별시의회 기관조직법 일부개정조례안(제10회)
제10회

이제는 그만한 힘을 더해온다. 그만한 힘은 그만한 힘을 더해온다.

33. 의안의 대표발의

서울시 |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34. 수정동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수정동의)

- ①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불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동의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불여 일정수 이상 의원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
(원안과 특별되지 않은 종속 안건이므로 특별한 표기 없음)

35. 수정동의 표기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20 제339회 - 제1차(2016년2월4일)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지요?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립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립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의화 의원, 김용익 의원, 양승조 의원, 박인숙 의원, 문정립 의원, 신경립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7선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차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율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차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율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동공간의 금연구역 설정요건

으로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요컨이 차나치게 엄격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제안설명드리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차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무독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문정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한 품 암아 체감시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동과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문정립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문정립 의원 다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립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에 사·보임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립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거주자 청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나치게 엄격하고

36. 번안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번안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의결로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

37. 범안표지

3.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응의 의견(임~털~의원~발의) ↗

○ 위원장 주경님~~~계속해서~~~의사일정 제3항 「광주 광역시·주 턱·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변안동의 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 신·입·탈·의원·변안통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

○ 임·택·위원...임·택·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택·소방시설·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통의에-대
해-제아설명을-드리겠습니다.

2. 選出日 等公告件에 대한 檢察의件(准正秀議員 80人 挑選)

100

38. 비공개회의의

서울시 | 회의규칙

제14조의2(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1/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통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친성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서울시)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통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

39. 비공개회의록 표지

제 000 회 국 회 (회)	의 원 회 회 의 록 (비공개부분)	제 00 호
국 회 사무처		
일 ~ 월 ~ 일 (~) 장 소		
의사일정		
1.		
실사론·안건		
2.		

(시분·비공개회의개시)

(시분·비공개회의종료)

40. 물거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이나 그 소속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으나 보존법의록에는 모두 게재)

41. 불거재 표7



201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의록

卷之三

○ 二〇一九年九月三十日 朝鮮中央通信社

크리스마스에
나를 찾으러
온 그녀는
나를 찾으러
온 그녀는

中華書局影印
宋史卷一百一十五

卷之三

여행의 힘

O 쟁률이 위원

中華書局影印
新編全蜀王集

Cultura e Identidade - 1998 - 1

Oxford University Press

中華書局影印
宋史

O 캐나다! 나의 땅! 나의 땅! 나의 땅!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책을 읽으라

1990년 1월 1일에 제정된 「국가기록법」은 국가기록을 보존·활용·제공하는 기본 원칙과 그에 따른 기록 관리 체계를 정한 법이다.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42. 비공개와 불개재회의 특의 열람·복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불개재 열람·복사 조항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
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3. 위원회의 제안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1.5., 2002.10.25., 2003.9.25., 2010.8.2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44. 위원회안과 대안



위원회안

위원회가 소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된 원안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음



대안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을 제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안을 제출

45. 위원회 제안 표기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회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공사·공단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현찬·강갑장·김경자·김영한·김인제·김창원·김태수·문형주·박근동·유용·이상록·이신혜·이윤희·전철수·조상호·최음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4시 | 09분)

○**의장 박래학**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총 3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을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사·공단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래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체택의 건(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제1인)

4.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제1인)

(14시 | 2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체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는
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안철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흥운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거창 출신 인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19일 구성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지방자치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별 「개정 틀 축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6. 제안자 표기



47. 연석회의

서울시 | 회의규칙

제5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48. 연석회|의

연석회의|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둘 이상의 위원회가 서로 관련 있는 안건

나. 대상 위원회
위원회 수에 제한 없음
상임위원회 상호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상호간

다. 회의 절차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주재
위원장 사고 시 소관위원회 간사가 대리

49. 연석호의 표기

第268回國會
議論會、開會中)

卷之三

국회 행정부원회 이의

100

時 2007年7月25日(木)
所 第3管弦場(3F席)

卷之三

卷之三

四百四

1. 아르헨티나-한국 FTA 협약 체결 보고
(통화통일 국제화 연설회의)
 2. 6·16 새한과 등 한일보고(통화통일)
 3. 6·16 새한 수익부정회의 협회
 4. 한-EU FTA 25주년 축하
 5. 바이번체프트로그램(WP) 전시회 참석

卷之三

1.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회합자인 친란 흐고 2
 (동화동학국방부 연락회의)

2. 6자회담 결과 등 원안도고통의통일 13

3. 4. 19회 남 수석대표회의 결과 4

4. 한-EU FTA 2차협상 전략 5

5. 미사령체계프로그램(VW) 기본설정 6

八九〇

심사면언제
1. 2010년 2월 25일
2. 2010년 3월 10일
3. 2010년 3월 15일
4. 2010년 3월 20일
5. 2010년 3월 25일
6. 2010년 3월 30일
7. 2010년 4월 10일
8. 2010년 4월 15일
9. 2010년 4월 20일
10. 2010년 4월 25일
11. 2010년 5월 5일
12. 2010년 5월 10일
13. 2010년 5월 15일
14. 2010년 5월 20일
15. 2010년 5월 25일
16. 2010년 5월 30일
17. 2010년 6월 5일
18. 2010년 6월 10일
19. 2010년 6월 15일
20. 2010년 6월 20일
21. 2010년 6월 25일
22. 2010년 6월 30일
23. 2010년 7월 5일
24. 2010년 7월 10일
25. 2010년 7월 15일
26. 2010년 7월 20일
27. 2010년 7월 25일
28. 2010년 7월 30일
29. 2010년 8월 5일
30. 2010년 8월 10일
31. 2010년 8월 15일
32. 2010년 8월 20일
33. 2010년 8월 25일
34. 2010년 8월 30일
35. 2010년 9월 5일
36. 2010년 9월 10일
37. 2010년 9월 15일
38. 2010년 9월 20일
39. 2010년 9월 25일
40. 2010년 9월 30일
41. 2010년 10월 5일
42. 2010년 10월 10일
43. 2010년 10월 15일
44. 2010년 10월 20일
45. 2010년 10월 25일
46. 2010년 10월 30일
47. 2010년 11월 5일
48. 2010년 11월 10일
49. 2010년 11월 15일
50. 2010년 11월 20일
51. 2010년 11월 25일
52. 2010년 11월 30일
53. 2010년 12월 5일
54. 2010년 12월 10일
55. 2010년 12월 15일
56. 2010년 12월 20일
57. 2010년 12월 25일
58. 2010년 12월 30일
59. 2011년 1월 5일
60. 2011년 1월 10일
61. 2011년 1월 15일
62. 2011년 1월 20일
63. 2011년 1월 25일
64. 2011년 1월 30일
65. 2011년 2월 5일
66. 2011년 2월 10일
67. 2011년 2월 15일
68. 2011년 2월 20일
69. 2011년 2월 25일
70. 2011년 2월 30일
71. 2011년 3월 5일
72. 2011년 3월 10일
73. 2011년 3월 15일
74. 2011년 3월 20일
75. 2011년 3월 25일
76. 2011년 3월 30일
77. 2011년 4월 5일
78. 2011년 4월 10일
79. 2011년 4월 15일
80. 2011년 4월 20일
81. 2011년 4월 25일
82. 2011년 4월 30일
83. 2011년 5월 5일
84. 2011년 5월 10일
85. 2011년 5월 15일
86. 2011년 5월 20일
87. 2011년 5월 25일
88. 2011년 5월 30일
89. 2011년 6월 5일
90. 2011년 6월 10일
91. 2011년 6월 15일
92. 2011년 6월 20일
93. 2011년 6월 25일
94. 2011년 6월 30일
95. 2011년 7월 5일
96. 2011년 7월 10일
97. 2011년 7월 15일
98. 2011년 7월 20일
99. 2011년 7월 25일
100. 2011년 7월 30일
101. 2011년 8월 5일
102. 2011년 8월 10일
103. 2011년 8월 15일
104. 2011년 8월 20일
105. 2011년 8월 25일
106. 2011년 8월 30일
107. 2011년 9월 5일
108. 2011년 9월 10일
109. 2011년 9월 15일
110. 2011년 9월 20일
111. 2011년 9월 25일
112. 2011년 9월 30일
113. 2011년 10월 5일
114. 2011년 10월 10일
115. 2011년 10월 15일
116. 2011년 10월 20일
117. 2011년 10월 25일
118. 2011년 10월 30일
119. 2011년 11월 5일
120. 2011년 11월 10일
121. 2011년 11월 15일
122. 2011년 11월 20일
123. 2011년 11월 25일
124. 2011년 11월 30일
125. 2011년 12월 5일
126. 2011년 12월 10일
127. 2011년 12월 15일
128. 2011년 12월 20일
129. 2011년 12월 25일
130. 2011년 12월 30일
131. 2012년 1월 5일
132. 2012년 1월 10일
133. 2012년 1월 15일
134. 2012년 1월 20일
135. 2012년 1월 25일
136. 2012년 1월 30일
137. 2012년 2월 5일
138. 2012년 2월 10일
139. 2012년 2월 15일
140. 2012년 2월 20일
141. 2012년 2월 25일
142. 2012년 2월 30일
143. 2012년 3월 5일
144. 2012년 3월 10일
145. 2012년 3월 15일
146. 2012년 3월 20일
147. 2012년 3월 25일
148. 2012년 3월 30일
149. 2012년 4월 5일
150. 2012년 4월 10일
151. 2012년 4월 15일
152. 2012년 4월 20일
153. 2012년 4월 25일
154. 2012년 4월 30일
155. 2012년 5월 5일
156. 2012년 5월 10일
157. 2012년 5월 15일
158. 2012년 5월 20일
159. 2012년 5월 25일
160. 2012년 5월 30일
161. 2012년 6월 5일
162. 2012년 6월 10일
163. 2012년 6월 15일
164. 2012년 6월 20일
165. 2012년 6월 25일
166. 2012년 6월 30일
167. 2012년 7월 5일
168. 2012년 7월 10일
169. 2012년 7월 15일
170. 2012년 7월 20일
171. 2012년 7월 25일
172. 2012년 7월 30일
173. 2012년 8월 5일
174. 2012년 8월 10일
175. 2012년 8월 15일
176. 2012년 8월 20일
177. 2012년 8월 25일
178. 2012년 8월 30일
179. 2012년 9월 5일
180. 2012년 9월 10일
181. 2012년 9월 15일
182. 2012년 9월 20일
183. 2012년 9월 25일
184. 2012년 9월 30일
185. 2012년 10월 5일
186. 2012년 10월 10일
187. 2012년 10월 15일
188. 2012년 10월 20일
189. 2012년 10월 25일
190. 2012년 10월 30일
191. 2012년 11월 5일
192. 2012년 11월 10일
193. 2012년 11월 15일
194. 2012년 11월 20일
195. 2012년 11월 25일
196. 2012년 11월 30일
197. 2012년 12월 5일
198. 2012년 12월 10일
199. 2012년 12월 15일
200. 2012년 12월 20일
201. 2012년 12월 25일
202. 2012년 12월 30일
203. 2013년 1월 5일
204. 2013년 1월 10일
205. 2013년 1월 15일
206. 2013년 1월 20일
207. 2013년 1월 25일
208. 2013년 1월 30일
209. 2013년 2월 5일
210. 2013년 2월 10일
211. 2013년 2월 15일
212. 2013년 2월 20일
213. 2013년 2월 25일
214. 2013년 2월 30일
215. 2013년 3월 5일
216. 2013년 3월 10일
217. 2013년 3월 15일
218. 2013년 3월 20일
219. 2013년 3월 25일
220. 2013년 3월 30일
221. 2013년 4월 5일
222. 2013년 4월 10일
223. 2013년 4월 15일
224. 2013년 4월 20일
225. 2013년 4월 25일
226. 2013년 4월 30일
227. 2013년 5월 5일
228. 2013년 5월 10일
229. 2013년 5월 15일
230. 2013년 5월 20일
231. 2013년 5월 25일
232. 2013년 5월 30일
233. 2013년 6월 5일
234. 2013년 6월 10일
235. 2013년 6월 15일
236. 2013년 6월 20일
237. 2013년 6월 25일
238. 2013년 6월 30일
239. 2013년 7월 5일
240. 2013년 7월 10일
241. 2013년 7월 15일
242. 2013년 7월 20일
243. 2013년 7월 25일
244. 2013년 7월 30일
245. 2013년 8월 5일
246. 2013년 8월 10일
247. 2013년 8월 15일
248. 2013년 8월 20일
249. 2013년 8월 25일
250. 2013년 8월 30일
251. 2013년 9월 5일
252. 2013년 9월 10일
253. 2013년 9월 15일
254. 2013년 9월 20일
255. 2013년 9월 25일
256. 2013년 9월 30일
257. 2013년 10월 5일
258. 2013년 10월 10일
259. 2013년 10월 15일
260. 2013년 10월 20일
261. 2013년 10월 25일
262. 2013년 10월 30일
263. 2013년 11월 5일
264. 2013년 11월 10일
265. 2013년 11월 15일
266. 2013년 11월 20일
267. 2013년 11월 25일
268. 2013년 11월 30일
269. 2013년 12월 5일
270. 2013년 12월 10일
271. 2013년 12월 15일
272. 2013년 12월 20일
273. 2013년 12월 25일
274. 2013년 12월 30일
275. 2014년 1월 5일
276. 2014년 1월 10일
277. 2014년 1월 15일
278. 2014년 1월 20일
279. 2014년 1월 25일
280. 2014년 1월 30일
281. 2014년 2월 5일
282. 2014년 2월 10일
283. 2014년 2월 15일
284. 2014년 2월 20일
285. 2014년 2월 25일
286. 2014년 2월 30일
287. 2014년 3월 5일
288. 2014년 3월 10일
289. 2014년 3월 15일
290. 2014년 3월 20일
291. 2014년 3월 25일
292. 2014년 3월 30일
293. 2014년 4월 5일
294. 2014년 4월 10일
295. 2014년 4월 15일
296. 2014년 4월 20일
297. 2014년 4월 25일
298. 2014년 4월 30일
299. 2014년 5월 5일
300. 2014년 5월 10일
301. 2014년 5월 15일
302. 2014년 5월 20일
303. 2014년 5월 25일
304. 2014년 5월 30일
305. 2014년 6월 5일
306. 2014년 6월 10일
307. 2014년 6월 15일
308. 2014년 6월 20일
309. 2014년 6월 25일
310. 2014년 6월 30일
311. 2014년 7월 5일
312. 2014년 7월 10일
313. 2014년 7월 15일
314. 2014년 7월 20일
315. 2014년 7월 25일
316. 2014년 7월 30일
317. 2014년 8월 5일
318. 2014년 8월 10일
319. 2014년 8월 15일
320. 2014년 8월 20일
321. 2014년 8월 25일
322. 2014년 8월 30일
323. 2014년 9월 5일
324. 2014년 9월 10일
325. 2014년 9월 15일
326. 2014년 9월 20일
327. 2014년 9월 25일
328. 2014년 9월 30일
329. 2014년 10월 5일
330. 2014년 10월 10일
331. 2014년 10월 15일
332. 2014년 10월 20일
333. 2014년 10월 25일
334. 2014년 10월 30일
335. 2014년 11월 5일
336. 2014년 11월 10일
337. 2014년 11월 15일
338. 2014년 11월 20일
339. 2014년 11월 25일
340. 2014년 11월 30일
341. 2014년 12월 5일
342. 2014년 12월 10일
343. 2014년 12월 15일
344. 2014년 12월 20일
345. 2014년 12월 25일
346. 2014년 12월 30일
347. 2015년 1월 5일
348. 2015년 1월 10일
349. 2015년 1월 15일
350. 2015년 1월 20일
351. 2015년 1월 25일
352. 2015년 1월 30일
353. 2015년 2월 5일
354. 2015년 2월 10일
355. 2015년 2월 15일
356. 2015년 2월 20일
357. 2015년 2월 25일
358. 2015년 2월 30일
359. 2015년 3월 5일
360. 2015년 3월 10일
361. 2015년 3월 15일
362. 2015년 3월 20일
363. 2015년 3월 25일
364. 2015년 3월 30일
365. 2015년 4월 5일
366. 2015년 4월 10일
367. 2015년 4월 15일
368. 2015년 4월 20일
369. 2015년 4월 25일
370. 2015년 4월 30일
371. 2015년 5월 5일
372. 2015년 5월 10일
373. 2015년 5월 15일
374. 2015년 5월 20일
375. 2015년 5월 25일
376. 2015년 5월 30일
377. 2015년 6월 5일
378. 2015년 6월 10일
379. 2015년 6월 15일
380. 2015년 6월 20일
381. 2015년 6월 25일
382. 2015년 6월 30일
383. 2015년 7월 5일
384. 2015년 7월 10일
385. 2015년 7월 15일
386. 2015년 7월 20일
387. 2015년 7월 25일
388. 2015년 7월 30일
389. 2015년 8월 5일
390. 2015년 8월 10일
391. 2015년 8월 15일
392. 2015년 8월 20일
393. 2015년 8월 25일
394. 2015년 8월 30일
395. 2015년 9월 5일
396. 2015년 9월 10일
397. 2015년 9월 15일
398. 2015년 9월 20일
399. 2015년 9월 25일
400. 2015년 9월 30일
401. 2015년 10월 5일
402. 2015년 10월 10일
403. 2015년 10월 15일
404. 2015년 10월 20일
405. 2015년 10월 25일
406. 2015년 10월 30일
407. 2015년 11월 5일
408. 2015년 11월 10일
409. 2015년 11월 15일
410. 2015년 11월 20일
411. 2015년 11월 25일
412. 2015년 11월 30일
413. 2015년 12월 5일
414. 2015년 12월 10일
415. 2015년 12월 15일
416. 2015년 12월 20일
417. 2015년 12월 25일
418. 2015년 12월 30일
419. 2016년 1월 5일
420. 2016년 1월 10일
421. 2016년 1월 15일
422. 2016년 1월 20일
423. 2016년 1월 25일
424. 2016년 1월 30일
425. 2016년 2월 5일
426. 2016년 2월 10일
427. 2016년 2월 15일
428. 2016년 2월 20일
429. 2016년 2월 25일
430. 2016년 2월 30일
431. 2016년 3월 5일
432. 2016년 3월 10일
433. 2016년 3월 15일
434. 2016년 3월 20일
435. 2016년 3월 25일
436. 2016년 3월 30일
437. 2016년 4월 5일
438. 2016년 4월 10일
439. 2016년 4월 15일
440. 2016년 4월 20일
441. 2016년 4월 25일
442. 2016년 4월 30일
443. 2016년 5월 5일
444. 2016년 5월 10일
445. 2016년 5월 15일
446. 2016년 5월 20일
447. 2016년 5월 25일
448. 2016년 5월 30일
449. 2016년 6월 5일
450. 2016년 6월 10일
451. 2016년 6월 15일
452. 2016년 6월 20일
453. 2016년 6월 25일
454. 2016년 6월 30일
455. 2016년 7월 5일
456. 2016년 7월 10일
457. 2016년 7월 15일
458. 2016년 7월 20일
459. 2016년 7월 25일
460. 2016년 7월 30일
461. 2016년 8월 5일
462. 2016년 8월 10일
463. 2016년 8월 15일
464. 2016년 8월 20일
465. 2016년 8월 25일
466. 2016년 8월 30일
467. 2016년 9월 5일
468. 2016년 9월 10일
469. 2016년 9월 15일
470. 2016년 9월 20일
471. 2016년 9월 25일
472. 2016년 9월 30일
473. 2016년 10월 5일
474. 2016년 10월 10일
475. 2016년 10월 15일
476. 2016년 10월 20일
477. 2016년 10월 25일
478. 2016년 10월 30일
479. 2016년 11월 5일
480. 2016년 11월 10일
481. 2016년 11월 15일
482. 2016년 11월 20일
483. 2016년 11월 25일
484. 2016년 11월 30일
485. 2016년 12월 5일
486. 2016년 12월 10일
487. 2016년 12월 15일
488. 2016년 12월 20일
489. 2016년 12월 25일
490. 2016년 12월 30일
491. 2017년 1월 5일
492. 2017년 1월 10일
493. 2017년 1월 15일
494. 2017년 1월 20일
495. 2017년 1월 25일
496. 2017년 1월 30일
497. 2017년 2월 5일
498. 2017년 2월 10일
499. 2017년 2월 15일
500. 2017년 2월 20일
501. 2017년 2월 25일
502. 2017년 2월 30일
503. 2017년 3월 5일
504. 2017년 3월 10일
505. 2017년 3월 15일
506. 2017년 3월 20일
507. 2017년 3월 25일
508. 2017년 3월 30일
509. 2017년 4월 5일
510. 2017년 4월 10일
511. 2017년 4월 15일
512. 2017년 4월 20일
513. 2017년 4월 25일
514. 2017년 4월 30일
515. 2017년 5월 5일
516. 2017년 5월 10일
517. 2017년 5월 15일
518. 2017년 5월 20일
519. 2017년 5월 25일
520. 2017년 5월 30일
521. 2017년 6월 5일
522. 2017년 6월 10일
523. 2017년 6월 15일
524. 2017년 6월 20일
525. 2017년 6월 25일
526. 2017년 6월 30일
527. 2017년 7월 5일
528. 2017년 7월 10일
529. 2017년 7월 15일
530. 2017년 7월 20일
531. 2017년 7월 25일
532. 2017년 7월 30일
533. 2017년 8월 5일
534. 2017년 8월 10일
535. 2017년 8월 15일
536. 2017년 8월 20일
537. 2017년 8월 25일
538. 2017년 8월 30일
539. 2017년 9월 5일
540. 2017년 9월 10일
541. 2017년 9월 15일
542. 2017년 9월 20일
543. 2017년 9월 25일
544. 2017년 9월 30일
545. 2017년 10월 5일
546. 2017년 10월 10일
547. 2017년 10월 15일
548. 2017년 10월 20일
549. 2017년 10월 25일
550. 2017년 10월 30일
551. 2017년 11월 5일
552. 2017년 11월 10일
553. 2017년 11월 15일
554. 2017년 11월 20일
555. 2017년 11월 25일
556. 2017년 11월 30일
557. 2017년 12월 5일
558. 2017년 12월 10일
559. 2017년 12월 15일
560. 2017년 12월 20일
561. 2017년 12월 25일
562. 2017년 12월 30일
563. 2018년 1월 5일
564. 2018년 1월 10일
565. 2018년 1월 15일
566. 2018년 1월 20일
567. 2018년 1월 25일
568. 2018년 1월 30일
569. 2018년 2월 5일
570. 2018년 2월 10일
571. 2018년 2월 15일
572. 2018년 2월 20일
573. 2018년 2월 25일
574. 2018년 2월 30일
575. 2018년 3월 5일
576. 2018년 3월 10일
577. 2018년 3월 15일
578. 2018년 3월 20일
579. 2018년 3월 25일
580. 2018년 3월 30일
581. 2018년 4월 5일
582. 2018년 4월 10일
583. 2018년 4월 15일
584. 2018년 4월 20일
585. 2018년 4월 25일
586. 2018년 4월 30일
587. 2018년 5월 5일
588. 2018년 5월 10일
589. 2018년 5월 15일
590. 2018년 5월 20일
591. 2018년 5월 25일
592. 2018년 5월 30일
593. 2018년 6월 5일
594. 2018년 6월 10일
595. 2018년 6월 15일
596. 2018년 6월 20일
597. 2018년 6월 25일
598. 2018년 6월 30일
599. 2018년 7월 5일
600. 2018년 7월 10일
601. 2018년 7월 15일
602. 2018년 7월 20일
603. 2018년 7월 25일
604. 2018년 7월 30일
605. 2018년 8월 5일
606. 2018년 8월 10일
607. 2018년 8월 15일
608. 2018년 8월 20일
609. 2018년 8월 25일
610. 2018년 8월 30일
611. 2018년 9월 5일
612. 2018년 9월 10일
613. 2018년 9월 15일
614. 2018년 9월 20일
615. 2018년 9월 25일
616. 2018년 9월 30일
617. 2018년 10월 5일
618. 2018년 10월 10일
619. 2018년 10월 15일
620. 2018년 10월 20일
621. 2018년 10월 25일
622. 2018년 10월 30일
623. 2018년 11월 5일
624. 2018년 11월 10일
625. 2018년 11월 15일
626. 2018년 11월 20일
627. 2018년 11월 25일
628. 2018년 11월 30일
629. 2018년 12월 5일
630. 2018년 12월 10일
631. 2018년 12월 15일
632. 2018년 12월 20일
633. 2018년 12월 25일
634. 2018년 12월 30일
635. 2019년 1월 5일
636. 2019년 1월 10일
637. 2019년 1월 15일
638. 2019년 1월 20일
639. 2019년 1월 25일
640. 2019년 1월 30일
641. 2019년 2월 5일
642. 2019년 2월 10일
643. 2019년 2월 15일
644. 2019년 2월 20일
645. 2019년 2월 25일
646. 2019년 2월 30일
647. 2019년 3월 5일
648. 2019년 3월 10일
649. 2019년 3월 15일
650. 2019년 3월 20일
651. 2019년 3월 25일
652. 2019년 3월 30일
653. 2019년 4월

제3장 행정주체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
제4장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제5장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행사방법
제6장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제한
제7장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부수법적 성질

50. 도정(시정)질문

회의규칙 비교

<전라남도의회>

제73조의2(도정 등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
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제97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이나 도정의 특
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51. 도정질문 표기

도정질문 (전라남도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장 명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장방문 수행 관계로 오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이주신 방청석의 순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준 의원님 지역구에서 나주빛가람중학교 학부모회장 외 열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심**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답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심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자동으로 까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옥기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52. 도정질문 표기



제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원 연관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양근서 의원
○ 방성관 의원
○ 강경환 의원
○ 박재순 의원
○ 안승남 의원
○ 지미연 의원

○ 의장 윤학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양근서·방성관·강경환·박재순·안승남·지미연 의원)

○ 의장 윤학선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풀하우스 무원 풍단과 지난 제304회 정기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사항

별첨공무원 현황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교육청)

이번 제308회 임시회 풀하우스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출문의 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원으로 양근서 의원을 실시하고, 정회원

53. 대정부질문

五
四
三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37회 - 제62회(2015년10월13일) 1

제 6 호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337회 국회
(정기회)

국회사무처

2015년10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인정

정치에 관한 질문

부의원 안건	1
비교燮 단체(정의당) 대표발언	0
정치에 관한 질문	1
	5

54. 비교심판체 대표발언

제256회 제7차 1

제256회 - 청7가 2

國會本會議會議錄
(定期會) 第7號
國會事務處
2005年10月24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1. 경치에 관한 질문

○ 대법원장이(윤) 인사 1
0 대법원장이(윤) 인사 2

1. 경치에 관한 질문 2
0 비교심판체(민주당) 대표발언 2
1. 경치에 관한 질문(계속) 4

(10시12분 개회)
○ 의장 김원기 의석을 경로에 구사하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군립하는 자체를 바탕으로 국립을 실기는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10시12분 개회)
○ 의장 김원기 의석을 바탕하고 전정으로 국립을 실기는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원활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원기 한 가지 암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비실 봉은 활습기에 이상이 있
어서 이를 복구 중인 관계로 지금 당장 회의 단
기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경치에 관한 질문 (10시21분)

○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경치에 관한 질
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교실은
세 간접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3월간 대강실을
예약서 미로설계대로별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게
습니다.

○ 비교심판체(민주당) 대표발언

○ 의장 김원기 오늘은 먼저 비교심판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민주당 대표이신 한희갑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업부도 기업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은 나
할 생각입니다. 사업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

67. 자구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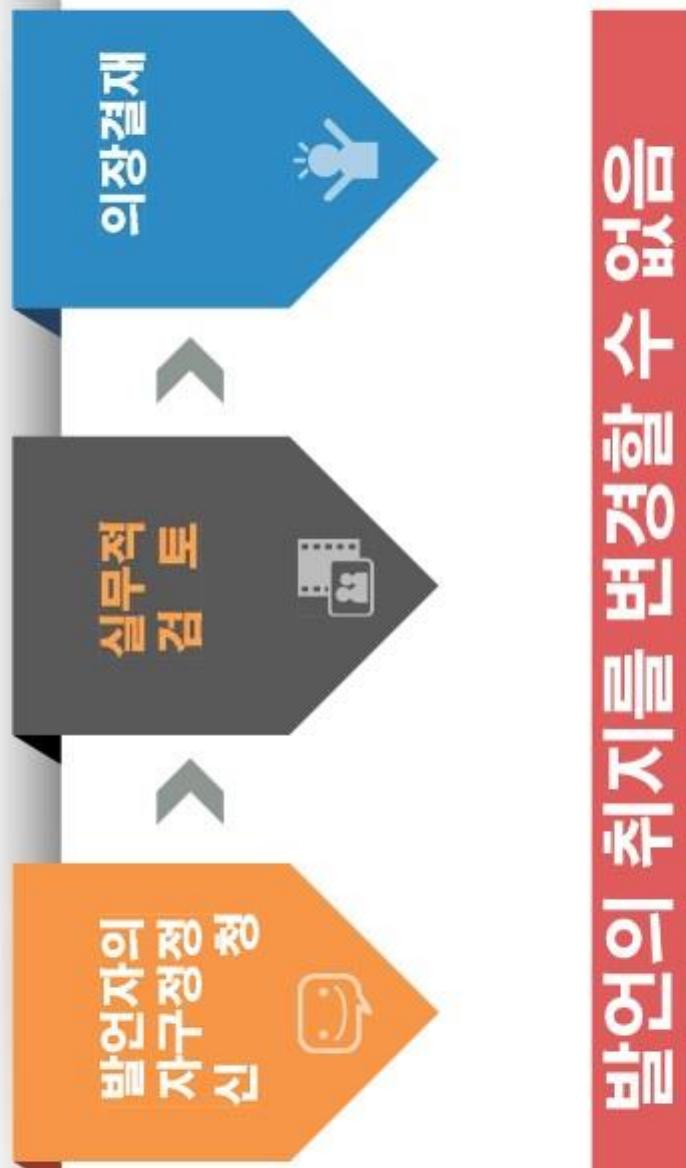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입시회의록이 전자화
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3일이내에 다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
와 번경문이나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1. 간로씨를 정정하는 경우
2. 오탈자가 있는 경우
3.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종료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68. 자구정정 절차



69. 서면질문과 서면질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5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70. 서면질문과 서면질의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 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 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71. 질문과 질의 차이

질문

1.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2. 국회 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

질의

1. 의심나거나 모르는 점을 물음
2.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 **는** 의안이나 동의 등에 관하여 의원이 국무위원, 정부 위원, 발의자는 제안자, 보고자에게 의문점을 따져 묻는 일.

77. 대통령 주임사 표기

67. 결혼개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8.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국립수산식품유업장 제출)	25
69.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충안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6
70. 구미 물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6
71. 교통사고 체로화 실천 결의안(주승용·박수현·박기준·윤관식·김성곤·민홍천·조현동·이명수·변재일·문병호·이이재·김민영·윤후덕·이윤식·배기준·안효태·오병윤·신기남·이노근·김태원·김윤덕·전하진·김희구·이준식·홍문표·안규혁·우윤근·이상민·신경웅·박병재·김기현·이나연·윤민석·부좌현·문태상·김종태·박홍근·우원식·김동안·황주홍·노영민·강은희·남경원·심학봉·김진표·심재권·박성호·김광진·이정우·김영주·신재윤·이상혁·김우남·김민기·강정일·이안형·옹동학·신재원·신경민·임나현·이미정·백인숙·윤호중·백한주·정동준·김성주·문정립·김슬동·도종환·김영환·백남준·정철태·장석호·이목희·강병완·홍영표·김한길·강기정·이준걸·양승조·최규성·김준전·조경식·유승희·김용익·강정희·김상운·여상규·홍지안·박주선·최원식·이철우·주미애·최재선·李承柱·남인순·최동익·이현승·전영·합진규·송성근·유대운·안덕수·김선천·정의회·김희경·이윤상·박대동·윤명희·박지원·송광호·심재원·박제자·조병천·백군기·김형태·전병현·김재운·권은희·이병식 의원 발의)	27
0 5년자유발언	28
0 의사진행의 전	34
0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취임사	100

○ 의장 김창희 의사장을 경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답니다.

○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설 음)
다.

○ 의장 김창희 평급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 미래대표 국회의원(김영주) 제포동의안이 정
무총리부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 왔
고, 현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2월 2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국회의원 제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창희 의사장을 제1항 국무총리(정총원) 임명동의안

1. 국무총리(정총원) 임명동의안
(14시17분)

○ 의장 김창희 의사장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난 2월 12일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국
무총리부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 왔
고, 현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2월 2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경충원에 대한 예산 및 벤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석 단발
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78. 대통령 주임사 표기

100 제313회 - 제55회(2013년2월26일)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취임사

일시 2013년2월25일(월) 오전 11시
장소 국회의사당 천민광장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새 시대 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무상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랑스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백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



THANK YOU

제25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음성인식 기술의 현황

이경식 대한속기협회 지도위원

■ 목 차 ■

I. 서 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175
2. 조사 대상 및 범위	176

II. 음성인식기술에 대한 이해

1. 음성인식기술의 정의	176
2. 음성인식데이터 구축	177
3.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과정	178
4. 음성인식기술의 상용화	179
5. 국내 음성인식기술 보유업체 및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180
6. 음성인식기술에 의한 자동 텍스트 변환	181

III.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동 텍스트 변환 기술 도입 예

-일본 중의원을 중심으로

1. 도입 배경	181
2. 개발 및 구축 경과	181
3. 개발 소요 비용	182
4.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 개요	182
5. 음성인식률 및 에디터의 개발	183
6.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 도입 전후 업무절차 및 담당자 비교	183
7.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 도입 후 주요 변화	184
8. 한국 국회와 일본 중의원의 속기업무 분장 비교	185
※ 일본 참의원의 회의록속성발간시스템	186
9. 기타 해외 사례	186

IV. 결 론	186
---------------	-----

I. 서 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1948년 10월 2일 국회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회의 회의는 국회법 제115조(회의록)제2항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및 제69조(위원회 회의록)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는 규정에 의한 속기방법을 사용하여 회의록 작성은 해 오고 있다.

우리 국회는 1948년 이후 속기방법으로서 수필속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오다가 1995년에 기계속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수필속기와 기계속기 두 가지 속기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오고 있다.

속기방법이 수필속기에서 기계속기로 전환 및 병용되는 과정에서 개량된 키보드를 이용하여 발언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아직 초기 단계였던 음성인식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 방법 시도 등 변화를 위한 여러 번의 연구가 있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실제 회의록 작성 업무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일본 중의원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음성인식기술의 점차적인 발전이 지속되어오다 2015년 초 음성인식기술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그동안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한 명령어 실행 수준이었던 음성인식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었으며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동 텍스트 변환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회의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속기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음성인식에 의한 자동 텍스트 변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음성인식 자동 텍스트 변환 방법이 사람이 속기를 통해 구현하는 속도 혹은 그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에 의한 속기방법과 음성인식 자동 텍스트 변환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국회 회의록 작성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보고서는 음성인식기술 발전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조사를 통하여 향후 회의록 작성 업무에 음성인식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본 조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한국의 경우 ETRI가 가장 오랫동안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으며,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동텍스트 기술 역시 80%대의 인식률이 확보됨에 따라 2015년에는 콜센터 상담원과 상담자들의 녹취기록 자동 텍스트 변환 기술을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함에 따라 상용화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관련 업종 20여개 업체에서 동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국내 음성인식기술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음성처리 부서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음성인식기술 개발 현황 파악 및 국회 회의록 작성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였다.

다른 한편 실제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을 비롯한 해외 의회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도입 전후의 효율성 및 비용 면에서의 비교 분석 그리고 의회 회의환경이 다른 한국 국회에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실효성에 대한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II. 음성인식기술에 대한 이해

1. 음성인식기술의 정의

음성인식기술은 사람이 말을 하면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그 공기가 성대에서 입술과 콧구멍까지의 통로인 성도(聲道)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며 만들어내는 소리(음성)를 컴퓨터가 소리센서를 통해 음향학적 신호로 인식 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명령어로 작동하여 특정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명령어 혹은 텍스트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음향모델과 언어모델 두 가지 데이터가 조합되어 결과를 도출하게 되며,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인식 구간부터 외부 소음을 제거하고 잡음을 처리하는 '전처리부'와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고 음향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해 인식결과를 도출하는 '인식부'로 구분돼 작동한다.

마우스나 키보드 터치 등 물리 인터페이스 대신 사람의 음성만으로 기기 및 정보서비스 이용, 텍스트 작성 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보통 음성인식을 통한 입력속도는 마우스나 키보드 등 물리 인터페이스 대비 2~3배 빠르다.

2. 음성인식 데이터 구축

가. 음향 모델

사람이 내는 소리신호를 음소 또는 형태소라 불리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분리하여, 각각의 단위 음소가 가진 특징적인 파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일정 패턴의 파형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유닛을 구축해 놓은 것을 음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리의 단위를 구분하여 모델링화해 놓은 것인데, ㄱ ㄴ ㄷ ㄹ 혹은 ㅏ ㅓ ㅗ ㅜ와 같은 각각의 소리를 유닛폰이라고 하며 몇 각각의 유닛폰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대로 조합한 여러 형태의 폰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3개의 유닛폰이 조합된 트라이폰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ㄱ’ ‘ㅏ’ ‘ㅇ’ 3개의 유닛폰은 각각의 고유 파형을 가지기도 하지만 3개의 유닛폰이 조합되어 ‘강’이라는 새로운 파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을 트라이폰이라고 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폰의 형태이다. 현재 15만 개 정도의 음소별 유닛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이 발화하는 거의 모든 음성을 음소 단위로 구현할 수 있다.

음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계음 조합이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에서 존재하는 발화자의 음성을 직접 녹음하여 데이터화해야 하는데, 발화자의 성별·연령·출신지역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소리의 인식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음성 정보를 입력,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대략 1500시간 정도를 음향모델의 수렴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500시간 정도의 음성정보를 분석하면 거의 모든 발화자의 특성에 따른 음성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향모델 면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모든 음성 분석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데이트를 요하지 않는다.

발화자의 발화 속도 또한 인식 조건 중의 하나인데 음성을 인식하는 속도 면에서는 기계적으로 0.02배의 속도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화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녹음된 음성의 경우 3분짜리 음성을 10초 이내에 인식 가능한 정도이며 실제로 런센터 상담원의 경우 약관 설명 시 일반 대화 속도의 2배 정도로 발화를 하지만 인식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언어모델

음성인식의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음향모델과 함께 내용적으로 문맥을 유추하여 정확한 인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모델은 인식할 수 있는 연속된 말들에 대한 데이터와 주어진 연속된 말에서 어떤

낱말들이 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언어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새롭게 유행되는 어휘나 혹은 신조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텍스트의 입력을 통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언어모델 데이터를 구축할 때에는 수십 년 분의 신문기사,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위키피디아 등에 등재된 자료들, 회의자료, 대본 등 가능한 모든 실제 텍스트를 아스키코드나 TXT의 형태로 변환하여 입력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이후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고 동계화시킴으로써 일정 유형의 패턴을 생성하게 되며 이 생성된 결과물이 언어모델이다. 음성인식의 최종단계에서는 음향모델과 언어모델의 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적합한 인식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다. 음성인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과제

현재 음성인식의 정확도는 텍스트를 이용한 딥러닝을 하더라도 80% 중반대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잡음 처리이다. 잡음의 원인은 발화자 주변에 소음요인이 있는 경우, 발화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다자가 동시에 발화하는 경우 및 기계 장치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문제들 역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발화자가 표준어가 아닌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 혹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발화자가 12. 9. 13이라고 소리를 냈을 경우 이것을 12점 9점 13으로 인식하느냐, 2012년 9월 13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학습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3.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과정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과정상 제1세대는 1952년 미국 통신업체 AT&T의 맨연구소가 단일 음성으로 말하는 숫자를 인식하는 오드레이 시스템을 개발한 때부터 1968년 정도까지 인데 이 시기에는 주로 숫자, 음절, 음소 등을 인식하려 시도되었으며 아날로그 필터 뱅크와 논리회로를 이용하여 공진주파수를 추출하여 음성인식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1968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를 2세대로 구분하며 1963년 IBM이 세계 최초로 음성을 통해 16개의 단어를 인식, 간단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음성인식기기인 슈박스를 공개하였으며, 미국을 선도로 영국, 일본 등의 국가 연구소들이 사람의 발화를 인식하는 전용 하드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 음성인식기술은 인식 가능한 단어가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군사용부터 로봇 분야 등으로 음성영역이 확장되었으며 DTW(Dynamic time Warping)를 이용한 시간 정규화 기법이 연구되었고 고립단어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 국방부에서는 음성인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000단어급의 연속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발전을 보였다.

제3세대는 198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일컫는데 1990년대에는 1995년 날말 단위 인식과 표현이 가능한 최초의 소비자용 음성인식제품 드래곤 턱테이트가 출시되었고 1996년 벨사우스가 ARS서비스로 사용자가 수화기에 말한 내용을 인식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포털 VAL를 개설해 상용화 국면에 들어선다. 이때부터 통계적 모델인 HMM(Hidden Markov Model)과 NN(Neural Networks)에 기반한 음성인식방법론이 출현하고 관련 기술이 상용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4세대인 2000년대 중반 이후 구글과 애플(시리)을 필두로 음성인식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적극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맞게 된다. 현재 음성인식기술은 고객경험관리 기업, 다국적 마케팅 기업, 소셜미디어 마케팅 기술 기업, 온라인 게임 개발자 등 다중언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50개의 언어블킷을 통해 실시간 텍스트 번역, 음성문자 번역 및 표기, 데이터 추출 및 제구조화, 사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익명화 기능을 이용하여 언어분석을 통한 딥러닝, 머신러닝, 뉴럴MT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센티먼트 분석 가능하게 되었다.

또 시만텍, 시스코, 에어버스, 포드, 토요타, BNP파리바, 다임러, 클레이 등 대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물론 미국 정보공동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터폴 등 국방 및 보안기관 등에서도 이미 음성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4. 음성인식기술의 상용화

현재 음성인식기술은 명령어 인식의 수준에서 낭독체 연속어 인식, 대화어 연속어 인식을 거쳐 무제한급의 자연어 음성인식의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구글 애플 MS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음성인식기술을 접목, 상용화시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구글의 경우 2010년 음성인식 서비스인 구글 보이스를 공개한데 이어 2012년에는 구글 나우를 선보이는데 나우는 음성명령 개인비서 서비스 방식이며 2016년에는 자연어 처리기술과 기계학습기술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도우미 구글 어시스턴트를 공개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는 구글 계정을 통해 일정, 연락처,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이나 명령의 문맥을 분석, 이에 맞춰 적절한 명령을 수행하는 개인서비스 제공을 발표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인 iOS에 탑재하여 검색 중심의 음성인식 개인서비스의 차별화를 선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Windows Phone8.1을 탑재한 코타나를 선보이며 모바일뿐만 아니라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RI가 콜센터 녹취 데이터 음성인식기술을 개발하여 녹취기록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여 고객 음성D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에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아이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를 개발한 뉴昂스 인수를 추진하여 모바일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LG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집 안 가전기기를 통제할 수 있는 홈 콘트롤 기능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으며, SK·KT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네비게이션 기능과 음성인식기술이 연동하여 자동차 운전 중에도 길안내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하고 있고, NH와 KB은행에서는 음성인식서비스를 통해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콕뱅크라는 서비스를 상용화한 상태이며, 네이버는 쇼핑서비스인 윈도시리즈에서 사이즈 문화 및 배송시기 조율 등에 적용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카카오도 기업이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엘로아이디와 플러스친구 등의 상품을 모색 중이며 이 외에도 다수의 통번역 전문 업체들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상품을 출시했다.

5. 국내 음성인식기술 보유 업체 및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가. 국내 음성인식기술 보유업체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SK종합연구소, KT
- 삼성전자, LG전자
- 네이버, 다음 카카오
- 시스트란인터넷내셔널
- 한컴인터프리 외 다수의 업체가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나. 국내외 업체 간 기술수준 차이²⁾

전반적인 음성인식기술 관련 분야는 글로벌 기업이 다소 앞서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어 영역에 관련한 기술(금융권·관광·통역 등)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TRI측에서는 한국어 관련 서비스에 관해서는 글로벌 기업에 비교할 때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1)음성인식기술 현황 입법조사처 보고서

2)음성인식기술 현황 입법조사처 보고서

6. 음성인식기술에 의한 자동 텍스트 변환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는 아직은 명령어 수행을 통한 기기의 작동 기술이 중심이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 추출이 더 많은 중요도를 가지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음성의 텍스트화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기업들에서도 관련 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 관해서는 ETRI가 관련 기술을 가장 오래 연구 개발해 왔으며 이미 상당 부분의 진척이 이루어져 2015년에는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 녹취기록을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관련 기술을 KB카드 등 20여 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 주었다. 현재 80%대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딥 러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식률이 9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TRI에서 100분토론 데이터와 1인 강연 데이터, 집단토론 데이터를 선험 데이터 없이 실험해 보았을 때 각각 80%, 90%, 90%대의 인식률을 보였으며 언어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킬 경우 5% 이상의 인식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자 인식의 경우 10명 내외는 98%, 30명 정도는 95%까지 가능하며 '네' 같은 짧은 음성 데이터보다는 발화시간이 길수록 인식률이 제고된다.

III.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동 텍스트 변환 기술 도입 예

-일본 중의원을 중심으로

1. 도입 배경

일본 중의원 속기사 양성소가 2006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를 더 이상 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중의원에서는 속기사가 양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사무직원만으로 회의록 작성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개발 및 구축 경과

- 2004년 10월 속기사 양성소 학생모집 중지 결정
- 2006년 12월 속기사 양성소 폐지
- 2009년 3월 ~ 2010년 3월 설계 · 개발 · 구축
- 2011년 4월 운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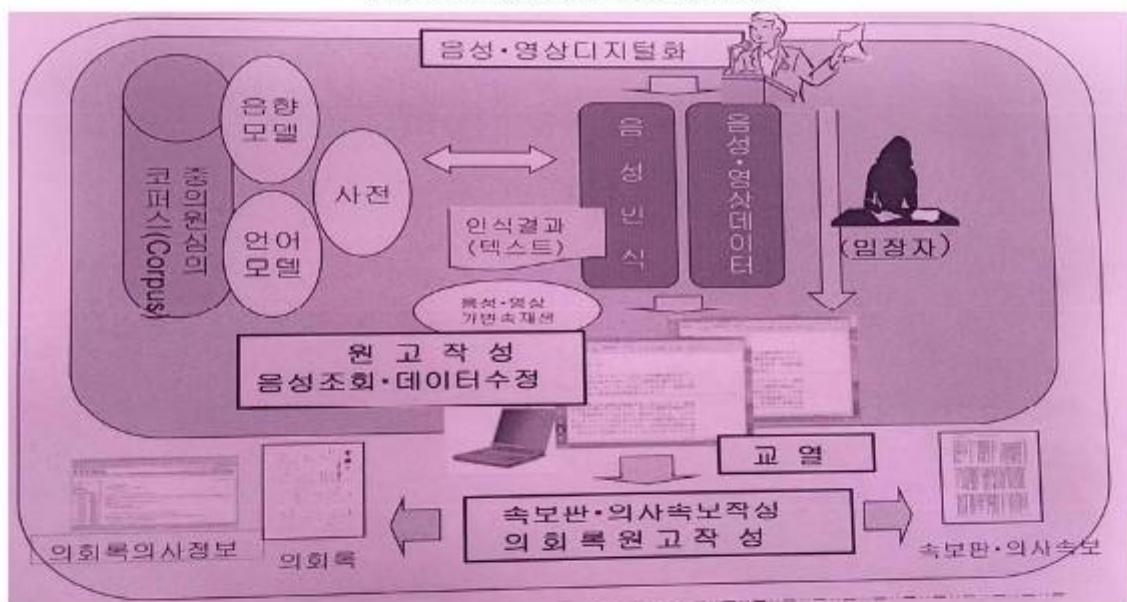
3. 개발 소요 비용

- 전체 약 20억 원(장비 및 설치비, 음성인식 관련 조사비용 별도)
- 교토대 코퍼스³⁾(corpus) 형성 후 구입비 : 400만 엔
- 음성인식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도시바) : 2억 엔
- 음성인식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관리 유지비 : 연간 1억 엔

4.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 개요

일본 중의원에서 회의록 작성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은 발언자의 음성을 입력받아 음성입력 → 음성엔진⁴⁾ → 음성데이터DB⁵⁾ → 포스트 프로세싱⁶⁾ → 변환 서버⁷⁾ → 텍스트 출력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속기원고 초고에 이용되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 개요도 〉



- 3) 음성과 그 음성을 충실히 기록한 텍스트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음향모델, 언어모델 등의 작성에 이용된다.
- 4) 음성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엔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음성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음성데이터DB와 합쳐진 러닝학습을 통하여 음성인식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음성인식컨소시엄(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을 구성해서 "줄리우스"라는 엔진을 공동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데이터DB와 합쳐진 음성엔진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함.
- 5) 한글단어, 문장 등을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구축한 음성단어장 DB사전으로서 음성엔진과 결합하여 기본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조어 등을 계속 추가 입력해야 함. 우리나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음성인식 연구에 필요한 한글단어장(60만 단어, 100만 문장)을 보유하고 있음.
- 6) 동음이의어 등 음성엔진에 입력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최종 텍스트로 출력하는 과정.
- 7)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개입해서 입력된 단어의 앞뒤 문맥 등을 검색하고, 해당 음성 사용자의 발언DB와의 검색, 대조 등을 통해서 그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서비스.

5. 음성인식률 및 에디터의 개발

가. 음성인식률

회의록 음성인식시스템 개발 시에는 85% 인식률을 목표로 하였으나 매년 유지 보수 시 새로운 회의 음성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평균 93%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음성인식률은 러닝학습⁸⁾에 의해 좌우되며 초선의원은 70% 정도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나 노다 총리 등 러닝학습이 된 발언자의 인식률은 96% 정도를 보이고 있음. 학습이 안 된 발언자의 발언은 속기사가 속기를 하여 보완하고, 노다 총리 등 인식률이 좋은 발언자의 발언은 변환된 텍스트를 교정하여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나. 에디터의 개발

음성인식 결과에는 발언자, 개의 및 정회·산회시간, 박수·고개를 끄덕임 등의 회의상황 등 회의록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져 있어 반드시 사람에 의한 인식 결과의 수정·편집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에디터의 개발은 회의록 작성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업무효율 향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회의록 음성인식시스템 개발의 중요한 열쇠이다.

에디터는 일반적인 워드프로세서에 있는 기능을 가지며 음성과 텍스트가 시작·문자 단위로 링크되어 있어 음성 및 영상의 속도를 조정하여 시청하면서 수정·편집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문자열 검색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회의록 표기로써 부적절한 부분의 텍스트 색을 바꾸어 표시하는 기능 등 작업 실수를 막기 위한 기능도 다수 담고 있다.

6.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 도입 전후 업무절차 및 담당자 비교

도입 전	업무절차	회의장 속기	속기내용 정리 및 회의록 원고 초고작성	필요사항 조사	음성 확인 및 최종원고 작성	교열	인쇄 배부
	담당자	속기사	속기사	속기사	속기사		
도입 후	업무절차	회의장 속기	인식결과 텍스트 수정 및 회의록 원고 초고작성	필요사항 조사	음성영상 확인 및 최종원고 작성	교열	인쇄 배부
	담당자	(일장자 ⁹⁾)	(원고작성자)	(조사자)	(임장정보 확인 (원고작성자임장자))		

7.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의 도입 후 주요 변화

가. 회의장에서의 속기

일반 상임위와 특별위에는 속기사가 회의장에서 속기하지 않으나, 본회의, 예산위원회,

8) 음성인식시스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9) 회의참석담당자로서 발언자, 불명확한 발언 등을 체크하여 원고작성자로서 번역원고 작성도 담당한다.

1인 30분 교대로 작업하여 회의장에서의 녹음도 책임진다.

특히 신속성이 요구되는 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 등은 종전대로 속기사가 회의장에서 속기를 병행하고 있다.

나. 회의록 작성 부서의 정원

회의록 작성부서의 정원은 회의록 음성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속기는 2010년 약 180명에서 2014년 7월 현재 156명으로 약 16% 감소되었다. 이후 퇴직 등 자연감소된 속기사의 정원은 일반 행정직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원고 작성자로 배속된 일반 행정직 직원은 2년간의 연수를 거쳐야 하며 2014년 7월 기준 9명의 행정직 출신 직원이 회의록 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

〈 행정직 직원의 속기업무 연수과정 〉

연수 기간	연수 내용
기초연수(6개월)	띄어쓰기 및 맞춤법, 회의록 제재, 원고작성법 등
전기 실무연수(6개월)	원고작성자와 2인1조로 1일 1회 정도 번문원고 작성업무
후기 실무연수(12개월)	원고작성자와 2인1조로 다른 원고작성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

다. 회의록 작성 소요 시간

5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원고가 작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속기사가 회의장에서 속기를 한 후 원고를 작성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회의록의 인터넷 등록까지 소요 시간은 4~6일, 책자 회의록 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 역시 회의 개의일로부터 평균 7~8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회의록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도 회의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투입되는 속기사 정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도입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업무의 효율화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8. 한국 국회와 일본 중의원의 속기업무 분장 비교

가. 속기업무 분장 비교

한국 국회(127인)		일본 중의원 (156인)	
담당자	업무 내용	담당자	업무 내용
속기사	회의장에서 직접 속기 후 개별 원고 작성	임장자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회의장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발언자, 의사진행 관련 시간 확인, 불분명한 발언, 위원장 교대, 발언자의 동작 등) 파악
		원고 작성자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음성인식 결과를 녹음으로 들으며 수정,
		조사	음성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첨취 지원
		전문반	원고 작성자와 교열자 중간 정도 경력자로 교열이나 원고 작성자를 지원·의회운영위원회 원고 작성
		교열	20~25년 경력자로 원고 작성자가 제출한 원고의 오·탈자 등을 확인
		운영	임장자, 원고작성자의 시간스케줄 일정 작성
편집	전체 통합원고 검토	편집	전체 통합원고 검토
담당	최종 원고 검토	담당	최종 원고 검토

나. 연간 회의시간 비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합계
한국	151	1742	388	1559	1482	51	5373
일본중의원	74	1113	256	1	-		1474

* 2013년 기준

다. 회의체 종류 비교

	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한국	18개 전임 상임위-13개 겸임 상임위-3개 상설 특위-2개	28개(19대 국회) ※ 인사청문특위 제외	약 30개 이상 (상설소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	6개 (19대 국회)
일본 중의원	17개	10개	4개	없음	없음

※ 참의원 회의록 속성 발간 시스템

속기사가 회의장에 실제 입장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회의영상과 음성을 전송받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영상과 음성의 속도를 변화시켜 시청하면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회의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9. 기타 해외 사례

세계 주요국 의회의 회의록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수필속기를 이용해서 회의록 작성은 하고 있으며, 영국은 테이프 문자화 방식, 독일은 속기사에 의한 속기, 호주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Dragon Naturally Speaking을 사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IV. 결 론

IV. 결 론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모든 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며 이 회의록들은 속기사에 의한 속기방법에 의해 작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속기사란 단순히 속기부호를 쓸 줄 아는 사람 또는 속기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속기부호나 기계속기를 다룰 줄 아는 것만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음성으로 표출되는 언어를 정확하게 청취하여 발언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한 후 문자로 정확하게 옮기어야 한다.

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언어를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글자화가 아닌 소리의 의미화이다.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전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이해력과 뉘앙스라고 일컬어지는 맥락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이는 단순히 소리의 글자화와는 다른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언어의 문자로의 변환은 소리의 문자화에 한정된 음성인식기술로는 완벽히 구현해 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일본 중의원의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한 회의록 발간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 2011년부터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작성 소요 시간의 경우 5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원고 작성 시까지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음성인식시스템 도입 전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회의록 작성방법이 속기방법에서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 바뀌었어도 회의록 작성업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음성인식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더라도 100% 정확한 인식율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도출된 텍스트를 이용하더라도 발언자 확인, 불분명한 발언, 의식발언, 장내소란, 각종 회의 상황 표기 등 회의 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공적 자료로서의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춘 정확한 회의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회의록 작성업무에 숙련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우수한 교열자의 육성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회의록의 작성 방법과 다른 면에서 2009년 일본 중의원이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을 개발하기 전 검토과제로 삼은 것은 첫째, 수필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초고를 작성할 것 둘째, 장기적으로 수필속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회의록을 작성할 것 셋째, 종전의 회의록 작성 속도를 유지 또는 향상시켜서 회의록 제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넷째, 회의록 작성에 관계되는 인원을 감축할 것 등이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는 첫째, 업무의 효율화로 기록부의 정원은 180명에서 156명으로 약 16% 가량 감소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중의원의 회의시간 총량으로 볼 때 향후 더 이상 줄어들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속기사 양성소의 폐지로 충원되지 않는 속기사의 정원은 일반 행정직을 일정기간 연수과정을 거쳐 회의록 발간업무에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회의록음성인식시스템 도입 이후 회의록 발간과정 상의 업무 분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속기사와 편집업무 2단계의 업무 분장이었다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입장자, 원고 작성자, 조사, 전문반, 교열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기간 단일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회 회의록 발간 업무 관련 인력 운용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국회에서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의 음성인식시스템 도입 문제는 일본 중의원과는 달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일문일답식 질문방식, 국정감사, 국정조사, 비공개 회의, 의석발언, 마이크 중단 이후의 발언, 월등히 많은 회의시간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등>

- 안드로이드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 개발(마이클 맥티어·조라이다 까에야스)
- 음성대화인식 모듈을 위한 미등록어 처리 및 동시인식기술(동아대학교 이창수)
- 음성인식기술 현황에 대한 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
- 주간기술동향(2015.8.5.)
- 전문가(박천규 ETRI 음성처리연구실장) 간담회